# 수산관련 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이 순 태

# 수산관련 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이 순 태

# 수산관련 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The Restructuring the Legislations related to the Fisheries Act 

연구자 : 이순태(연구위원)<br>Yi, Sun-Tae

$$
\text { 2016. 10. } 31 .
$$

## 요 약 문

## I．배경 및 목적

$\square$ 연구의 배경

○ 수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그리고 자연 환경의 변화는 수산 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수산업에 관한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다양하게 변 화하고 발전해 왔음

○ 수산업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수산관련 법령의 인큐베이터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수산업법에서 분화된 개별법들이 수산관련 법령체계를 형성하게 됨．최근 제정된「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종래 수산분야 법령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수산업법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으며，양 식업에 관한 규율내용을 수산업법에서 분화시키고자 하는 입법 동향은 수산업법의 내용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1953년 제정 이후 수산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규율하던 「수 산업법」과 수산업법으로부터 분화된 개별법령으로 형성된 수산 관련 법령체계는 기본법의 제정이나 양식업 관련 규정의 개별 법화를 위해서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그 체계 개편의 제 1 차 적이며 핵심적인 대상은 수산업법이 되지 않을 수 없음．
$\square$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이라는 수산 관련 법령체계의 큰 변화를 바탕으로 양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개편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 주요 내용

$\square$ 수산관련 기본법의 체계 및 분석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법률 제 명에서 ‘수산＇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지만，법률의 내용을 살 펴보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는 ‘수산’이 독립적으로 유의 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해양＇에 부수되어 ‘해양수산＇으 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의 관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수산업’에 관한 법적 정의를 두고 있지 만 수산물유통업을 수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지에 관하여 차 이 발생하고，소금생산에 관해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동일하게 어업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지만「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해 규 율되고 있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산업법 중 수산일반에 관련되는 규정이 이관되었으며，기본법 이전에 실질적으로 수산관련 법령체계에서 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수산업법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할 필요 발생
$\square$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 분석

○ 수산업법의 입법연혁
－1953년 수산업법이 법률 제295호로 공포된 이후 수산업법은 수산 업법 전부개정법률，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그리고 행정조직의 개 정에 관한 법률들과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들 등으로 52 차에 걸쳐 개정．전체 개정 중에서 수산업법 개정법률에 의한 개정이 28 차에 이르고，다른 법률에 의해 24 차 개정
－수산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수산업법의 주요 규율내용이 개정되 는 경우로는 어장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기르는어업육성법，내 수면어업법，원양산업발전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이 있음
－조직법에 의한 수산업법의 개정은 규범 그 자체의 내용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수산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수산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상공 부에서 해무청（상공부 소속），농림부，수산청（농림부 소속），해양 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순으로 수산사무 소관기 관이 변화되어 왔음

○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수산업법에서 규율하던 내용이 「내수면어 업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이관되었다가，「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은 「내수면어업법」으로 개정되었다가，내수면에서의 낚시 및 내수

면어업법에서 신고어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관상어양식에 관한 내 용이 분화되면서 각기 개별법으로 성립

○ 수산물가공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 수산물가공업은 수산업법 제정 당시에는 수산제조업이라는 명칭 으로 규정되다가(허가제), 2001년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되었고(등록제), 농림수산식품부가 만 들어지면서 2011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됨(신고제)

○ 어장관리에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 어장의 병해방지를 위한 명령, 연안수역의 정화 등에 관한 수산 업법의 규정이 어장관리법 제정으로 이관됨

○ 기르는어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부담금, 사업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199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가 2002년 기 르는어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수산업법에서 삭제되 어 이관됨
- 그 이후 자원조성 등에 관한 규정은 2009년 수산자원관리법이 제 정되면서 이관되고, 기르는어업육성에 관한 규정은 2009년 수산 업법 전부개정으로 수산업법에 이관되었으며, 수산생물진료에 관 한 규정은 2011년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되고, 기르는어업육성법은 폐지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동향

○ 양식산업발전법안의 제안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체계를 정비"하고 "어업 회사법인의 양식업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등 양식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위해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정부 제출법률안으로, 의원발의법률안으로 제 19 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수산업법의 변화

- 양식산업발전법이 성립되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양식 관련 어업의 종류가 삭제되고, 어업관련 규정만이 남게됨
$\square$ 수산관련 법령의 체계 개편방안
○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개편
○ 수산업-어촌의 분화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이 영위되는 공간 또는 수산 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관한 규율과 산업에 관한 규율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반적 이지 않음.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에 관한 규정 및 어촌에 관한 공통규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어촌 그 자체만을 위한 규정의 비중은 낮기 때문에, 수산업에 관해서는 향후 어촌 과 분리하여 독립된 기본법을 제정하고, 어촌에 관해서도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어촌정책을 국민과 공무원이 항시 개관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의 체계 개편 방안

- 어업법으로의 법명 개정 검토 : 수산업법은 제정법 당시부터 수산 제조업에 관하여 규율은 하였지만 그 비중은 낮은 것이었고, 현재 로는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 또한, 어획물운반업은 1990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종이지만, 그 성격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계없이 "운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물의 유 통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에 적합. 양 식업을 규율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될 경우, 수산업법의 중심 은 어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제명을 어업법으로 개정하고, 어업이라고 하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
- 내수면으로의 적용범위 확장 :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제정당시의 수산업법은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공수면에 적용되었던 것이고,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내수면과 해수면을 통 합하는 양식산어발전법이 만들어진다면 현행 수산업에서도 굳이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별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고, 어업에 관한 통합법률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 어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수산업법에는 수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획규정이 부재하고 있고, 수산관련 법령개편을 통해 산업으 로서의 어업을 진흥 내지 육성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어업의 구조개선 내지 지원 : 현행 수산업법을 어업의 육성 내지 진흥에 관한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 그리고 구조개선 내지 선진화 에 관한 규정 도입
- 하위법령의 체계 개편 : 수산업법은 입법연혁적 사유로 다른 법 률과는 달리 4 개의 대통령령, 8 개의 시행규칙이 존재하는 등 하 위 법령의 체계가 복잡하여 수산관련 법령체계 개편을 통해 알 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III. 기대효과

수산분야 입법체계 정비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이며, 수 산분야 정책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square$ 수산분야 입법실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수산분야 법령 체계의 정합성 제고에 기여

2 주제어 : 수산법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 체계개편, 양식 산업 발전 법


## I . Background and Purpose

$\square$ Background of this study

O The changing social, economic and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fishing industry has profoundly reshaped it at many important level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shing have accordingly evolved to keep abreast of the changes in the industry and remain continuously relevant.

O In Korea, the Fisheries Act, since its enactment more than half a century ago, has served over the decades as an incubator for many other fish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fishing-related legal system in place today is made up of these various laws that have grown out of the Fisheries Act. In recent years,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has had the effect of eroding the traditional role of the Fisheries Act as the framework law, prompting the need to rethink its place within the body of laws governing this industry. Moreover, the currently ongoing initiative to legislate provisions dealing with aquaculture in the Fisheries Act into a separate law is making changes in its content necessary as well.

O Since its enactment in 1953, the Fisheries Act has broadly governed legal matters related to fishing, and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this industry rests upon this law and other laws deriving from it. Following the recent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and ahead of the planned legislation of provisions on aquaculture into a separate law, it is crucial that this system be overhauled to ensure its harmony and consistency. The primary focus in this overhaul must naturally be the Fisheries Act. <br> Purpose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directions for the overhaul of the legal system governing fisheries in which significant changes are in motion following the recent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legislative activity aimed at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 П. Main Contents

$\square$ Framework Laws Related to Fisheries and Their Relationships

O Framework Act on Marine Fishery Development and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 The Framework Act on Marine Fishery Development and the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both have a title containing the word 'fishery/fisheri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Fishery Development, the term 'fishery' is used as part of the customary expression, 'marine fishery (haeyangsusan),' which broadly designates marine
resources and industries, rather than to specifically or narrowly refer to the fishing industry.

O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nd the Fisheries Act

- The Framework Act and the Fisheries Act differ in their definition of the 'fishing industry' concerning whether or not the retail and wholesale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is included in its scope. On the other hand, both laws consider the manufacture of salt part of the fishing industry. However, the salt industry is regulated by a separate law; namely,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general fishery-related provisions of the Fisheries Act have been transferred to it. As this has diminished the status of the Fisheries Act as the framework law, the need has arisen to rethink its role within the system of laws governing the fishing industry.
$\square$ Fisheries Act and Other Related Fishing Laws


## Legislative Timeline of the Fisheries Act

- The Fisheries Act was proclaimed law No. 295 in 1953. Since then, it was successively amended for fifty-two total times, pursuant to the Law on the Complete Amendment of the Fisheries Act, Law on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Fisheries Ac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mendment Act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mong others. Twenty-eight amendments were effected in accordance with laws specifically dedicated to the
amendment of the Fisheries Act and twenty-four others in accordance with other laws.
- Key provisions of the Fisheries Act have been amended in some cases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other fishing-related laws such as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Quality Control of Fishery Product Act, Fish Farming Development Act, Inland Water Fisheries Act,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ies Enterprises,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Act, Act on Structurally Improving and Supporting Coastal Fisheries,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Management and Support Act,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nd the Fishery Seed Industry Fostering Act.
- Amendments introduced to the Fisheries Act pursuant to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have had a negligible impact on the rules themselves. However, they have had significant consequences on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other fishery-related laws and resulted in measurable changes in the way fishery policies were carried out. Also,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fisheries affairs has changed successively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o the Office of Marine Affairs (under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of Fisheries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again back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Legislative Timeline of Inland Water Fisheries-related Regulations

- Regarding inland water fisheries, upon the enactment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Development Promotion Act, related provisions in the Fisheries Act were transferred to it. The Inland Water Fisheries Development Promotion Act was later amended and renamed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The portions of this act that deal with inland-water angling and ornamental fish farming, a fishery category subject to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it, were subsequently incorporated into a separate law.

O Legislative Timeline of Fishery Product Processing Industry Regulations

- The fishery product processing industry was initially regulated by the Fisheries Act, under the designation as the "fishery manufacturing industry" (subject to permit requirements). In 2001 when the Quality Control of Fishery Product Act was established, related provisions were transferred to it (changed from permit to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2011, with the creation of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y were again transferred, this time to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reporting requirements).


## Legislative Timeline of Fishing Ground Management Regulations

- Executive orders on the prevention of the pollution and contamination of fishing grounds and provisions related to cleaning up coastal waters were transferred from the Fisheries

Act to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upon the latter's enactment into law.

## Legislative Timeline of Fish Farming Regulations

- During the 1995 amendment of the Fisheries Act, a series of new provisions on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resources,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contributions' and how related projects are commissioned were introduced. Later, in 2002,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sh Farming Development Act, these provisions were transferred to the new law and were deleted from the Fisheries Act.
- Provisions on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resources were again transferred to th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Act in 2009 when the latter law was passed. Moreover, fish farming-related provisions were reintegrated into the Fisheries Act in 2009 when this law was comprehensively amended in its entirety. Finally, provisions dealing with aquatic life medicine were incorporated into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when the new law was enacted in 2011, with the Fish Farming Development repealed.
$\square$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Bill

- A legislative bill for "consolidating aquaculture-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Fisheries Act and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nd overhauling the legal framework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was introduced. The bill is aimed at
"upgrading the aquaculture industry among others through the issue of aquaculture permits to fisheries corporations" and "foster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is industry by creating a review and evaluation scheme for the issue of permits." This lawmaker-proposed bill wa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but was discarded as the legislature's term expired before it could be considered.

O Changes Expected in the Fisheries Ac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 Once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s passed to law, aquaculture-related fisheries categories will be removed from the Fisheries Act and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with only provisions on fisheries proper remaining.Directions for Updating the Legal Framework of the Fishing Industry

O Overhauling the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Policy Council.

Separating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 The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is unusual in that it is a single law that governs both the fishing industry and physical spaces where those engaged in this industry work or reside. The Framework Act lays down mostly rules applying to the fishing industry alone or applying to both the industry and fishing communities. Only a small number of them are regulations that are relevant exclusively to fishing communities.

Going forward, it may be desirabl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framework law solely dedicated to the fishing industry. A separate framework law for fishing communities may also be necessary as a stable apparatus providing Korean people and government officials with an overview of related policies for greater consistency of policy over time.

O Suggested Directions for Updat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Fishing Industry

- Change of title to "Eoeopbeop [Fisheries Act]"*: Although the manufacture of fishery products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Fisheries Act since its initial enactment, the law contains only a small number of provisions dealing with it. Moreover, the manufacture of fishery products is currently regulated by another law. Furthermore, the transportation of fisheries catch, an activity added to the scope of the Fisheries Act at the time of the 1990 amendment, is a simple transportation activity, having little to do with the act of catching or harvesting aquatic animals or plants. Therefore, it is more appropriate that this activity be regulated by the Act on the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Etc. Finally, if and when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governing the aquaculture industry is enacted, the focus of the Fisheries Act will be narrowed to the activity of catching fish only. It is thus

[^0]advisable to rename the law (whose current Korean title is 'Susaneopbeop') 'Eoeopbeop' which more clearly denotes its scope, at the same time as revising its content by adding new provisions or amending existing provisions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eoeop; in other words, the fishing industry in the narrow sense of the term.

-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include inland water fishing: At the time of the original legislation of the Fisheries Act, no distinction was made between inland and marine fishing. In the absence of such a distinction, rules set forth under this law were understood to apply to fishing activities in all public waters. I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is to comprehensively govern all aquaculture activities both in inland and marine waters is passed to law, this will further negate the need for the current Fisheries Act to distinguish inland and marine waters. Therefore, the Fisheries Act should instead be amended to clearly delineate its scope as a general fishing law.
- Establishment of a Roadmap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shing Industry: The current Fisheries Act does not provide a roadmap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ies industry as a whole. Hence, by appropriately amending fisheries-related laws, a comprehensive, long-term plan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ote or foster fishing as an industry.
- Structural Improvement of, and Support for, the Fishing Industry: The current Fisheries Act can be amended to serve also as a law supporting the growth of the fishing industry. This can be
achieved by introducing new provisions stipulating support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those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r upgrading of the fishing industry.
- Overhauling low-level laws: Due to its long legislative timeline, the Fisheries Act has a uniquely complicated set of decrees and regulations under it, including four Presidential Decrees and eight Enforcement Rules. These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need to be overhauled and simplified for greater clarity.


## III. Expected Effect

$\square$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legislative initiatives to update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fisheries sector and assist policymakers in establishing a policy framework for this sector.
$\square$ Used as reference in concrete legislative tasks, the suggestions offered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coherence of the legal system for the fishing industry.

2 Key Words : Fishing laws,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updating the legal framework,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11
제 1 장 서 론 ..... 23
제 1 절 연구의 의의 ..... 2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 25
제 2 장 수산관련 기본법의 체계 및 분석 ..... 27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27
2.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에서의 수산업의 범위 ..... 28
3. 기본법에 따른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범위 ..... 35
제 3 장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 분석 ..... 37
4. 수산업법의 입법연혁 ..... 37
5.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동향 ..... 80
6.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따른 수산업법의 변화 ..... 86
제 4 장 수산관련 법령의 체계 개편방안 ..... 95
7.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개편 ..... 95
8. 수산업법의 체계 개편 방안 ..... 111
참 고 문 헌 ..... 135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의의

수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그리고 자연 환경의 변화는 수산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선박이나 어로기술의 발달에 따른 어선•어구 및 어법의 변화，수산자원의 감소나 양식기술의 발 달에 따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변화，수산물의 안전성 에 대한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요구，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감 소，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수온상승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동 등은 수산업이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수산업에 관한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다 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수산행정의 소관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었다가 신설됨에 따라 수산분야에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며，특히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수산관련 법률의 입법적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현행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는 법률로 서 1953년 법률제정 이후 수산에 관한 대부분을 사항을 규율하는 법 률로서 큰 변화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시대적 필요에 따른 수 산업법 개정은 법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해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현행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에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수산업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수산관련 법령의 인큐베이터의 역 할을 수행하여 왔다．수산업법에 도입되어 집행되고 있던 정책이 개 별법에 의한 규율이 필요할 정도로 발전되면서 관련 규정이 수산업법

에서 독립되어 개별법으로 분화되어 갔다．즉，어장관리법，수산물품 질관리법，기르는어업육성법，내수면어업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자원 관리법，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육 성법 등은 수산업법에서 분화되어 개별법으로 독립된 법률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으며，무엇보다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중에도 수산업법에서 이관된 조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어업 중에서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 며，양식을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증대되고 있 다．이에 따라 어업개념의 한 표지로서 정의되고 있던＇양식＇을 어업 으로부터 분리시켜 양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자 시도되고 있다．이러한 시도는 제19대 국회에서 「양식산업발전법안」 의 발의라는 모습으로 등장하였지만，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어업에서 양식을 분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수산업법의 구조 뿐만 아니라 수산관련 법령체계에도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양식산업발전 관련 법률이나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변화는 수산 업법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말하자면， 수산업법을 중심에 둔 수산관련 법령체계 전체에 대한 개편을 고려하 지 않고，한 두 가지 법률의 제•개정만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 법 률 자체의 제•개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수산관련 법령체계 전체 가 기형적인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이라는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큰 변화를 바탕으로 양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 한 법제도 정비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개편에 관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수산에 관한 법령은 수산업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규율내용을 담고 있었던 수산업법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 다. 수산업법은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수산 내지 수산업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 내지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말하자면, ‘수산업 단일법’시대가 장기간 지속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수산 관련 법령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면서 수산관련 법령은 상호연관성 내 지는 계통성을 확보하기 시작하였지만, 한편으로 내용적으로 중복되 는 법령 등이 생기면서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산관련 법령은 수산업법에서 분화되어 개별 법으로 제정되는 유형이 다수이며, 일부는 '농어업'에서 분화되면서 제정되기도 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수산관련 법령을 해양수산 부분에 관한 기본법과 수 산업법을 중심으로 분화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물론 수산 '관련성' 내지 ‘수산업' 관련성을 보다 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연구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나, 법령 체계개편이라 는 관점에서 볼 경우에 입법연혁적 관련성과 법률상 정의에 따른 수산 업의 내용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연구의 대상을 상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산관련 법령의 입법연혁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통시적 으로 수산관련 법령체계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행 법령체계를 공시적으로 개관하여 향후 법제적 관점에서의 개편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산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적 당부나 수산정책에 관한 제안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법제도에 관한 상세한 검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 참조하고 있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하는 법령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입법과정에 관한 내용은 국회에서 제공하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였다.

## 제 2 장 수산관련 기본법의 체계 및 분석

## 1．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관련 법령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입법적으로 관련 기본법에 서 정하는 내용을 그 범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수산에 관련되는 기본법으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해 양수산발전 기본법」이 있다．
먼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그 제 명에서는 ‘발전 기본법’을 공유하지만，‘해양수산’과 ‘수산업－어촌’이라 는 점에서는 규율목적과 그 대상 및 수단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에서의＇해양＇과＇수산업－어촌＇에서의＇어촌＇은 그 차별성 이 명확하지만，‘수산＇과 ‘수산업＇의 관계에서는＇수산＇이 ‘수산업’을 개 념적으로는 포괄하는 것이라 이해된다．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 수산발전 기본법，에서는 ‘수산’이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해양수산＇이 관용적으로 사용되거나＇해양＇의 하위개념 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 1 조 및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제 2 조를 보더라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이 장에서＇기본법’이라 한다）이 포괄하는 수산관련 법령체계로는 기본법에서 정의하는＇수산 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산업에 관한 법령과 간접적•부수적으로 어촌 에 관련되는 법령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수산업’의 범위가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행정조직이 소관하는 수산관련 법령의 범위보다 협소하기 때문에 이 는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수산관련 법령의 범위가 매우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는 수산관련 기본법으로서는 유일한 기본법이 포괄하 지 못하는 수산관계 법률이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기본법의 규율대상 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의 수산업의 범위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

기본법은 2014년 9월 12 일에 윤명희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9월 15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다.1) 2015년 4월 28일 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2015년 5월 29일 제 333 회 제 3 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2015년 6월 11일 정부에 이 송된 후 2016년 6월 22일 제13383호로 공포되었다.2)

입법의 주요한 동기는 해양수산부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3 ) 해양 수산부가 1996년 신설4)되면서 해양수산에 관한 기본법으로서「해양수 산발전 기본법」을 가지게 되었으나,5)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내용 이 주로 해양에 집중된 것이어서 '수산'에 관한 기본법을 가지고 있지 는 않았다. 다만, 수산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는 정책연구 기관 등에서 수행되기도 하였다.6)

1)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참조, 11 월 7일 최종접속 확인
2)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참조, 11 월 7일 최종접속 확인
3)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 중 제안이유를 보면 해양 수산부의 신설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정부조직법 법률 제 5153 호, 1996.8.8. 일부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신설
5)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법률 제6700호, 2002.5.13., 제정
6) 전재경 외,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체계 정비 - 개선방안 연구, 2002.10, 해양수산부, 제 4 장 제 1 절에서는 수산기본법제의 정비에 관해 일본과 영국의 법제를 소개하면서 논의하고 있다. 최성애, 수산기본법 제정방안, 2007년도 수산부문 연구과제 추진상 황,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제3분과위원회), 2007.10.25. 당시 논의된 수산기 본법제의 제정방향이나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위 자료 참조.

수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이는 해 양수산부의 폐지로 무산되었으며，수산부문이 농림식품부에 이관되면 서 농림식품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어업•어촌’이 통합되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비록 제명에서 ‘어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개념상 ‘수산업’ 보다는 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어업에 포괄되지 않는 수산물가 공업에 관한 내용이＇농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제50조）이나 수산업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소금산업에 관한 내용을 어업 속에 포함시켜서 다루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수산에 관한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수산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으로는「수 산업법」이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이면서도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따라서 수산업법은 수산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에 영향 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항상적으로 기본법의 제정에 있어 참조되어야 하는 법률이었던 것이다．
（2）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의 수산업의 범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의 수산업의 범위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 상이하다．
＜표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의 수산업의 범위＞

|  | 어업 |  |  | 어횐문 | 수산뭉멉 | 수산뭉 |
| :---: | :---: | :---: | :---: | :---: | :---: | :---: |
|  | 포획－채취 | 양식 | 송근 |  |  |  |
| 기본법상 수산업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어업 |  |  | 어획물 | 수산물 |
| :---: | :---: | :---: | :---: | :---: | :---: | :---: |
| 가공업 |  |  |  |  |  | | 순삽물 |
| :---: |
| 유통업 |

수산업에 관한 정의는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수산업 법 제2조제1호에서 하고 있다．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물유통업을 수산업의 범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두 법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표 수산업에 포함되는 각 업의 정의＞

|  | 기본법 | 수산업법 |
| :---: | :---: | :---: |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 채취 （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염 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 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제3조 제1호가목）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 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 을 생산하는 사업（제2조제2호） |
| $\begin{aligned} & \text { 어획물 } \\ & \text { 운 반업 } \end{aligned}$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 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 하는 산업（제3조제1호나목）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 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 하는 사업（제2조제3호） |
| 수산물 가공업 |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 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사료 나 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 거나 가공하는 산업（제3조제1 호다목） |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 료•호료（糊料）• 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 하는 사업（제2조제4호） |


|  | 기본법 | 수산업법 |
| :---: | :---: | :---: |
| 수산물 <br> 유통업 |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 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 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제 3 조제 1 호라목） |  |

（1）수산업에 포함되는 각 업의 정의에는＇산업＇과＇사업＇의 차이가 존재한다．
（2）어업이나 어획물운반업에 관한 두 법의 정의는 동일하다．
수산업법에서는 소금생산업을 어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수 산업법의 규정에는 소금생산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수산업 법의 제명과 내용이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수산물가공업의 경우 기본법에서는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수산업법에서는＇수산동식 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기본법에서 는 가공물을＇식료품，사료나 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등을 포함 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로 하는 반면，수산업법에서는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또는 가죽’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식품산업진흥법」 제 19 조의 5 제 1 항 본문 중 정의는 수산업법상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수산업법 제59조에서는＂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여 실질적 규율 내용을 가지고 있 지 아니하다．「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5 제 1 항은 ‘수산물가공업을 하 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에 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령에 관련 규정 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입법 연혁적으로 수산물가공업을 규율하던 수 산업법의 흔적이 있을 뿐이다．따라서 수산업의 한 분야로 수산물가 공업을 규정하고 마치 수산업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법리 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부합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수산물유통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은 수산업의 한 분야로 규정하 고 있으나，수산업법에서는 수산물유통업을 수산업의 범위에 포함시 키고 있지 않다．수산물유통업에 관해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서 정의하고 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2 호에서 수산물유통산업을＂수산 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 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 는 것으로 기본법의 정의와 동일하다．

## （3）기본법과 수산업법의 관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산업법 중 어업인의 날을 규정하고 있는 수 산업법 제3조의 2 ，수산업법 제 7 장 중 수산진흥종합대책을 규정하고 있는 제74조，수산발전기금에 관한 수산업법 제8장（제76조부터 제80조 까지）이 각각 수산업법에서 삭제되었다．어업인의 날에 관한 규정은 기본법 제 5 조（수산인의 날），수산진흥종합대책에 관한 규정은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법 제 7 조，수산발전기금 에 관한 규정은 기본법 제6장 제 46 조부터 제 50 조까지 규정되면서 수 산업법에서 삭제되었다．
이로써 수산업법 중 제 7 장 수산업의 육성，제 8 장 수산발전기금에 관 한 규정은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75조를 제외 하고는 삭제된 것이다．제 75 조의 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의 수산업의 범위

이로써 1953년 9월 9일에 제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수산관련 법령체 계에서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수산업법이 이제는 어업과 어획물운반업에 관한 법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기본법 제정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기본법으로 수용된 내용>

| 수산업법 | 기본법 |
| :---: | :---: |
| 제 3 조의 2 (어업인의 날) (1) 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 의 날로 한다. <br>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 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br> (3) 제 2 항에 따른 어업인의 날 기념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 제 5 조(수산인의 날) (1) 수산업•어촌 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 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 하여 매년 4월 1 일을 수산인의 날 로 정한다. <br>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br> (3) 제 2 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
| 제 74 조(수산진흥종합대책) (1) 해양수 산부장관은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 하고 경쟁력 있는 육성•발전을 위 하여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br> (2) 제 1 항의 수산진흥종합대책에는 다음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 1. 수산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br> 2. 수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br> 3. 수산인력 • 법인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br> 4.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장환경의 정화에 관한 사항 | 제 7 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 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br>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 1. 수산업•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 책의 기본방향 <br>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br> 3. 수산업-어촌에 관한 시책 |

6. 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수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어촌의 개발 및 관광촉진에 관한 사항
9. 수산기술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10. 수산업의 대외협력 및 투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진흥종합 대책을 세우려는 때에는 미리 시• 도지사, 수산 관련 단체의 장 및 관 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수산업 - 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 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13.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 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보 강 및 보전
14. 그 밖에 수산업 어촌의 종합 적 • 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어촌에 관한 중 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 립한 때에는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도계획과 그 관 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 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7)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 군•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7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어업경영 기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 | :---: |
| 제 77 조(기금의 조성) | 제 47 조(기금의 조성) |
| 제 78 조(기금의 운용 - 관리) | 제 48 조(기금의 운용 - 관리) |
| 제79조(기금의 용도) | 제49조(기금의 용도) |
| 제80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

## 3. 기본법에 따른 수산관련 법령체계의 범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 제명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직접적 규율대상이 수산업 - 어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산업 및 어촌에 관련되는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이나 입법지침 및 정책지침으로 기능하는 것이며, 그 밖에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수산 관련 업무에 관련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하지만 역시 포괄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본법에서 수산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표 수산업 관련 법령체계의 범위>

| 수산업 |  | 관련 법령 |
| :---: | :---: | :---: |
| 어업 | 채포산업 <br> (포획•채취)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자 <br> 원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br> 법률 |


| 수산업 | 관련 법령 |
| :---: | :---: |
| 양식산업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소금생산 <br> 산업 | 소금산업 진흥법 |
| 어획물운반업 | 수산업법 |
| 수산물가공업 | 수산업법, 식품산업진흥법 |
| 수산물유통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 3 장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 분석

## 1. 수산업법의 입법연혁

(1) 수산업법의 개정을 수반한 법률의 개정

1) 수산업법 입법연혁

1953년 수산업법이 법률 제295호로 공포된 이후 수산업법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그리고 행정조직의 개정에 관한 법률들과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들 등으로 52 차에 걸쳐 개정되고 있다.
전체 개정 중에서 수산업법 전부-일부개정법률에 의한 개정이 28 차 에 이르고, 다른 법률에 의해 24 차 개정되었다.
<표 수산업법 입법연혁 일람표>

| 연번 | 법령명 |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제개정구분 |
| :---: | :--- | :--- | :---: |
| 1 | 수산업법 | 1953.12.9. <br> 법률 제295호, 1953.9.9. | 제정 |
| 2 | 수산업법 | 1954.4.2. <br> 법률 제313호, 1954.3.12. | 일부개정 |
| 3 | 수산업법 | 1963,7.1. <br> 법률 제1321호, 1963.4.11. | 일부개정 |
| 4 | 수산업법 | 1967.7.15. <br> 법률 제1365호, 1963.7.15. | 일부개정 |
| 5 | 수산업법 | 1965.12 .30. <br> 법률 제1736호, 1965.12.30. | 일부개정 |
| 6 | 수산업법 | 1966.4.23. <br> 법률 제1780호, 1966.4.23. | 일부개정 |


| 연번 | 법령명 | 시행일자 <br> 고번호 및 공포일자 | 제개정구분 |
| :---: | :--- | :--- | :--- |
| 7 | 수산업법 | 1971.7 .23. <br> 법률 제2300호, 1971.1.22. | 일부개정 |
| 8 | 수산업법 | 1972.10 .7. <br> 법률 제2347호, 1972.10.7. | 일부개정 |
| 10 | 수산업법 | 1976.7 .1. <br> 법률 젭법 2836 호, 1975.12.31. | 일부개정 |


| 연번 | 법령명 | 시행일자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제개정구분 |
| :---: | :---: | :---: | :---: |
| 19 | 공유수면매립법 | $\begin{aligned} & \text { 1999.8.9. } \\ & \text { 법률 제5911호, 1999.2.8. } \end{aligned}$ | 타법개정 |
| 20 | 수산업법 | 1999.4.15. <br> 법률 제5977호, 1999.4.15. | 일부개정 |
| 21 | 어장관리법 | 2001.1.29. <br> 법률 제6257호, 2000.1.28. | 타법개정 |
| 22 | 수산업법 | 2001.10.1 <br> 법률 제6398호, 2001.1.29. | 일부개정 |
| 23 | 수산물품질관리법 | $\begin{aligned} & \text { 2001.9.1. } \\ & \text { 법률 제6399호, 2001.1.29. } \end{aligned}$ | 타법개정 |
| 24 | 기르는어업육성법 | 2003.7.15. <br> 법률 제6611호, 2002.1.14. | 타법개정 |
| 25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2003.1.1. <br> 법률 제6656호, 2002.2.4. | 타법개정 |
| 26 | 수산업법 | 2005.7.1. <br> 법률 제7314호, 2004.12.31. | 일부개정 |
| 27 | 내수면어업법 | 2005.10.1 <br> 법률 제7477호, 2005.3.31. | 타법개정 |
| 28 | 수산업법 | 2007.1.3. <br> 법률 제8226호, 2007.1.3. | 일부개정 |
| 29 | 해양환경관리법 | 2008.1.20. <br> 법률 제8260호, 2007.1.19. | 타법개정 |
| 30 | 수산업법 | 2007.4.11. <br> 법률 제8377호, 2007.4.11. | 전부개정 |
| 31 | 수산업법 | 2007.7.27 <br> 법률 제8564호, 2007.2.27. | 일부개정 |


| 연번 | 법령명 |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및 공일자 | 제개정구분 |
| :---: | :--- | :--- | :--- |
| 32 | 원양산업발전법 | 2008.2.4. <br> 법률 제8626호, 2007.8.3. | 타법개정 |
| 33 | 정부조직법 | 2008.2.29. <br> 법률 제8852호, 2008.2.29. | 타법개정 |
| 3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br> 지원에 관한 법률 | 2009.10.2. <br> 법률 제9620호, 2009.4.1. | 타법개정 |


| 연번 | 법령명 |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제개정구분 |
| :---: | :---: | :---: | :---: |
| 45 | 지방세외수입금의 <br>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014.8.7. <br> 법률 제11998호. 2013.8.6. | 타법개정 |
| 46 | 수산업법 | 2013.8.13. <br> 법률 제12084호, 2013.8.13. | 일부개정 |
| 47 | 수산업법 | 2015.3.25. <br> 법률 제 12541 호, 2014.3.24. | 일부개정 |
| 48 | 수산업법 | 2015.1.16. <br> 법률 제12823호, 2014.10.15. | 일부개정 |
| 49 | 수산업법 | $\begin{aligned} & \text { 2015.1.20. } \\ & \text { 법률 제13054호, 2015.1.20 } \end{aligned}$ | 일부개정 |
| 50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6.3.28. <br> 법률 제13268호, 2015.3.27. | 타법개정 |
| 51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2015.12.23. <br> 법률 제13383호, 2015.6.22. | 타법개정 |
| 52 | 수산업법 | 2015.12.23. <br> 법률 제13384호, 2015.6.22. | 일부개정 |
| 53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2016.6.23. <br> 법률 제13385호, 2015.6.22. | 타법개정 |

2) 수산업법 전부•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수산업법 개정법률로 28 차 개정되었 으며, 그 중에서 1990년, 2007년, 2009년 개정은 전부개정으로, 2007년 전부개정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개정으로 법률의 규범내용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1995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 률에 의해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 연번 | 법령명 | 시행일자 |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제개정구분 |
| :---: | :---: | :---: | :---: | :---: |
| 1 | 수산업법 | 1953.12.9. | 법률 제295호, 1953.9.9. | 제정 |
| 2 | 수산업법 | 1954.4.2. | 법률 제313호, 1954.3.12. | 일 부개정 |
| 3 | 수산업법 | 1963,7.1. | 법률 제1321호, 1963.4.11. | 일부개정 |
| 4 | 수산업법 | 1967.7.15. | 법률 제1365호, 1963.7.15. | 일 부개정 |
| 5 | 수산업법 | 1965.12.30. | 법률 제1736호, 1965.12.30. | 일부개정 |
| 6 | 수산업법 | 1966.4.23. | 법률 제1780호, 1966.4.23. | 일 부개정 |
| 7 | 수산업법 | 1971.7.23. | 법률 제2300호, 1971.1.22. | 일부개정 |
| 8 | 수산업법 | 1972.10.7. | 법률 제2347호, 1972.10.7. | 일 부개정 |
| 9 | 수산업법 | 1976.7.1. | 법률 제2836호, 1975.12.31. | 일 부개정 |
| 10 | 수산업법 | 1981.6.21. | 법률 제3392호, 1981.3.20. | 일부개정 |
| 11 | 수산업법 | 1985.7.1. | 법률 제3764호, 1984.12.31. | 일부개정 |
| 12 | 수산업법 | 1991.2.2. | 법률 제4252호, 1990.8.1. | 전부개정 |
| 13 | 수산업법 | 1996.12.31. | 법률 제5131호, 1995.12.30. | 일 부개정 |
| 14 | 수산업법 | 1999.4.15. | 법률 제5977호, 1999.4.15. | 일부개정 |
| 15 | 수산업법 | 2001.10.1 | 법률 제6398호, 2001.1.29. | 일 부개정 |
| 16 | 수산업법 | 2005.7.1. | 법률 제7314호, 2004.12.31. | 일 부개정 |
| 17 | 수산업법 | 2007.1.3. | 법률 제8226호, 2007.1.3. | 일부개정 |
| 18 | 수산업법 | 2007.4.11. | 법률 제8377호, 2007.4.11. | 전부개정 |
| 19 | 수산업법 | 2007.7.27. | 법률 제8564호, 2007.2.27. | 일부개정 |
| 20 | 수산업법 | 2010.4.23. | 법률 제9626호, 2009.4.22. | 전부개정 |
| 21 | 수산업법 | 2010.4.23. | 법률 제9948호, 2010.1.25. | 일부개정 |
| 22 | 수산업법 | 2010.11.18 | 법률 제10292호, 2010.5.17. | 일부개정 |


| 연번 | 법령명 | 시행일자 |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제개정구분 |
| :---: | :---: | :---: | :---: | :---: |
| 23 | 수산업법 | 2011.10 .26. | 법률 제10943호, 2011.7.25. | 일부개정 |
| 24 | 수산업법 | 2013.12 .19 | 법률 제11566호. 2012.12.18 | 일부개정 |
| 25 | 수산업법 | 2013.8 .13. | 법률 제12084호, 2013.8.13. | 일부개정 |
| 26 | 수산업법 | 2015.3 .25. | 법률 제12541호, 2014.3.24. | 일부개정 |
| 27 | 수산업법 | 2015.1 .16. | 법률 제12823호, 2014.10.15. | 일부개정 |
| 28 | 수산업법 | 2015.1 .20. | 법률 제13054호, 2015.1.20 | 일부개정 |
| 29 | 수산업법 | 2015.12 .23. | 법률 제13384호, 2015.6.22. | 일부개정 |

3) 수산업법의 개정을 초래한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된 경우는 24 차에 이르고 있 다.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된 수산업법의 내용을 보자면, 행정조직 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산업법상의 소관 행정기관이 개정되는 경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한 수산업법의 개정 등), 행정절차에 관한 청문 제도의 도입이나 법령의 정비를 위한 법령의 개정으로 절차규정이 입법 적 실수가 개정되는 경우(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 에관한법률,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수 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법명이 개정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산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수산업법의 주 요 규율내용이 개정되는 경우(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 에관한법률, 어장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기르는어업육성법, 내수면어 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자

원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종자산업육 성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수산업법의 개정>

| 연번 | 법령명 | $\begin{gathered} \text { 시행일자 } \\ \text {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end{gathered}$ | 제개정구분 |
| :---: | :---: | :---: | :---: |
| 1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 $\begin{aligned} & \text { 1982.2.1. } \\ & \text { 법률 제3492호, 1981.12.31. } \end{aligned}$ | 타법개정 |
| 2 | 해양오염방지법 | 1991.9.9. <br> 법률 제4365호, 1991.3.8. | 타법개정 |
| 3 | 정부조직 법 | 1996.8.8. <br> 법률 제5153호, 1996.8.8. | 타법개정 |
| 4 | 행정절차법의시행에 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 $\begin{aligned} & \text { 1998.1.1. } \\ & \text { 법률 제5453호, 1997.12.13. } \end{aligned}$ | 타법개정 |
| 5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 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 에관한법률 | $\begin{aligned} & \text { 1998.1.1. } \\ & \text { 법률 제5454호, 1997.12.13. } \end{aligned}$ | 타법개정 |
| 6 | 공유수면매립법 | 1999.8.9. <br> 법률 제5911호, 1999.2.8. | 타법개정 |
| 7 | 어장관리법 | 2001.1.29 <br> 법률 제6257호, 2000.1.28. | 타법개정 |
| 8 | 수산물품질관리 법 | $\begin{aligned} & \text { 2001.9.1. } \\ & \text { 법률 제6399호, 2001.1.29. } \end{aligned}$ | 타법개정 |
| 9 | 기르는어업육성 법 | 2003.7.15. <br> 법률 제6611호, 2002.1.14. | 타법개정 |


| 연번 | 법령명 | $\begin{gathered} \text { 시행일자 } \\ \text {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end{gathered}$ | 제개정구분 |
| :---: | :---: | :---: | :---: |
| 10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br>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2003.1.1. <br> 법률 제6656호, 2002.2.4. | 타법개정 |
| 11 | 내수면어업법 | $\begin{aligned} & \text { 2005.10.1. } \\ & \text { 법률 제7477호, 2005.3.31. } \end{aligned}$ | 타법개정 |
| 12 | 해양환경관리법 | $\begin{aligned} & \text { 2008.1.20. } \\ & \text { 법률 제8260호, 2007.1.19. } \end{aligned}$ | 타법개정 |
| 13 | 원양산업발전법 | 2008.2.4 <br> 법률 제8626호, 2007.8.3. | 타법개정 |
| 14 | 정부조직법 | 2008.2.29 <br> 법률 제8852호, 2008.2.29. | 타법개정 |
| 15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9.10.2. <br> 법률 제9620호, 2009.4.1. | 타법개정 |
| 16 | 공유수면 관리 및 <br> 매립에 관한 법률 | 2010.10.16 <br> 법률 제10272호, 2010.4.15. | 타법개정 |
| 17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1.10.22 <br> 법률 제10890호, 2011.7.21 | 타법개정 |
| 18 | 수산자원관리법 | $\begin{aligned} & \text { 2012.1.26. } \\ & \text { 법률 제10944호, 2011.7.25. } \end{aligned}$ | 타법개정 |
| 19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br>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2.7.26. <br> 법률 제10947호, 2011.7.25. | 타법개정 |
| 20 | 정부조직법 | 2013.3.23. <br> 법률 제11690호, 2013.3.23. | 타법개정 |
| 21 | 지방세외수입금의 <br>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014.8.7. <br> 법률 제11998호. 2013.8.6. | 타법개정 |
| 22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6.3.28. <br> 법률 제13268호, 2015.3.27. | 타법개정 |


| 연번 | 법령명 |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제개정구분 |
| :---: | :--- | :--- | :--- |
| 23 | 수산업 • 어촌 발전 <br> 기본법 | 2015.12.23. <br> 법률 제13383호, 2015.6.22. | 타법개정 |
| 24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2016.6.23. <br> 법률 제13385호, 2015.6.22. | 타법개정 |

(1)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의 개정
(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산업의 개정
조직법에 의한 수산업법의 개정은 규범 그 자체의 내용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수산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조직법의 개정에 의 한 수산정책의 소관부서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산업법의 개정>

| 연번 | ```법령명 \\ 시행일자 / \\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개정내용 |
| :---: | :---: | :---: |
| $\star$ | ※수산업 법 <br> 1966.4.23./ <br> 법률 제1780호, 1966.4.23.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청이 신 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주무부 장관 $\rightarrow$ 수산청장, 주무부 $\rightarrow$ 수산청, 본 법 $\rightarrow$ 이 법, 각령 $\rightarrow$ 대통령령) |
| 1 | 정부조직법 1996.8.8. <br> 법률 제5153호, 1996.8.8. | "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개정 |
| 2 | 정부조직법 2008.2.29 <br> 법률 제8852호, 2008.2.29. |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를 "농 림수산식품부"로 개정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 <br>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개정내용 |
| :---: | :---: | :---: |
| 3 | 정부조직법 <br> 2013.3.23. <br> 법률 제 11690 호, 2013.3.23. |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 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 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 |

위 표 중 연번 $\star$ 로 되어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산 업법의 개정이 아니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종전의 수산업 법이 개정되던 것이다. 1966년 수산업법 개정 이전의 수산업법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을 행정청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수산청장"으로 명시하 도록 개정하였다.
(ㄴ) 수산사무의 관장 행정기관의 변천
1966년 개정 이전의 수산행정에 관한 사무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연혁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변천되어 왔다.
<표 수산사무의 관장 행정기관 변화>

| 연 도 | 관장 행정기관 |
| :---: | :---: |
| 1948 년 | 상공부 |
| 1955년 | 해무청(상공부장관소속) |
| 1961 년 | 농림부 |
| 1966년 | 수산청(농림부장관소속) |
| 1973년 | 수산청(농수산부장관소속) |
| 1987년 | 수산청(농림수산부장관소속) |

제 3 장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 분석

| 연 도 | 관장 행정기관 |
| :---: | :---: |
| 1996 년 | 해양수산부 |
| 2008 년 | 농림수산식품부 |
| 2013 년 | 해양수산부 |

<표 수산사무 관련 정부조직법의 연혁>

| 연 혁 | 관련 조문 | 비 고 |
| :---: | :---: | :---: |
| 정부조직법 [시행 1948.7.17.] <br> [법률 제1호, 1948.7.17., 제정] | 제 22 조 상공부장관은 상업•수산•광업• <br> 공업•전기•도량형•특허와 무역에 관 한 사무를 장리한다. | 상공부 |
| 정부조직법 [1955.2.7.] <br> [법률 제354호 <br> 1955.2.7., 전부개정] | 제22조 (1)~(2) (생략) <br> (3) 수산 - 해양경비 - 조선 - 항만공사에 관 한 사무와 일반항만 및 해운행정을 관장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해무청 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 국 - 해운국과 시설국을 둔다. | 해무청 <br> (상공부 <br> 장관 소속) <br> 1수산국 |
| 정부조직법 <br> 1961.10.2. <br> 법률 제734호 <br> 1961.10.2., 폐지제정 | 제 25 조 (농림부) (1) 농림부장관은 농산• 잠업 - 식량 - 농지 - 수리 - 산림 - 축산 수산(어선건조와 어항시설을 포함한다)과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br> (2)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 - 양정국 - 농지국 • 산림 국 - 축산국 - 수산국과 지역사회국을 둔다. <br> (3) (생략) | 농림부 /수산국 |
| 정부조직 법 1966.2.28 <br> 법률 제1752호 | 제30조 (농림부) (1)~(6) (생략) <br> (7)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 | 수산청 <br> (농림부 <br> 장관소속) |


| 연 혁 | 관련 조문 | 비 고 |
| :---: | :---: | :---: |
| 1966.2.28., 일부개정 | 다. <신설 $1966 \cdot 2 \cdot 28>$ <br> (8) 수산청에 청장 1 인과 차장 1 인을 두 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 급 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1966 \cdot 2 \cdot 28>$ <br> (9) 제7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 여 수산청에 어정국 • 생산국과 시설국을 둔다. <신설 1966•2•28> | /어정국 • <br> 생산국과 <br> 시설국 |
| 정부조직법 <br> 1973.3.3. <br> 법률 제2557호 <br> 1973.3.3., 일부개정 | 제36조 (농수산부) (1)~(4) (생략) <br> (5)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 <br> (6) 수산청에 청장 1 인과 차장 1 인을 두 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 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br> [전문개정 1973 • 3 • 3] | 수산청 <br> (농수산부 <br> 장관소속) |
| 정부조직 법 <br> [시행 1987.1.1.] <br> [법률 제3854호, <br> 1986.12.20., <br> 일부개정] | 제36조 (농림수산부) (1)~(6) (생략) <br> (7)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 을 둔다. <개정 1986•12•20> <br> (8) 수산청에 청장 1 인과 차장 1 인을 두 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 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 $1 \cdot 4 \cdot 8>$ <br> [전문개정 1973•3•3] | 수산청 <br> (농림 <br> 수산부 <br> 장관 <br> 소속) |
| 정부조직 법 <br> [시행 1996.8.8.] <br> [법률 제5153호, <br> 1996.8.8., 일부개정] | 제 41 조 (해양수산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 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 발 및 해난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br> (2)~(4) (생략) <br> [본조신설 1996•8•8] | 해앙수산부 |


| 연 혁 | 관련 조문 | 비 고 |
| :---: | :---: | :---: |
| 정부조직법 <br> [시행 2008.2.29.] <br> [법률 제8852호, <br> 2008.2.29., <br> 전부개정] | 제31조 (농림수산식품부) (1)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 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br> (2)~(6) (생략) | 농림수산 <br> 식품부 |
| 정부조직법 <br> [시행 2013.3.23.] <br> [법률 제11690호, <br> 2013.3.23., <br> 전부개정] | 제 43 조 (해양수산부)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 통, 해운 -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 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3) (생략) | 해양수산부 |

(2) 수산업법상 법명의 개정 법률

| 연번 | 법령명 | $\begin{gathered} \text { 시행일자 } \\ \text {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end{gathered}$ | 제개정구분 |
| :---: | :---: | :---: | :---: |
| 1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 $\begin{aligned} & \text { 1982.2.1. } \\ & \text { 법률 제3492호, 1981.12.31. } \end{aligned}$ | 타법개정 |
| 2 | 해양오염방지법 | $\begin{aligned} & \text { 1991.9.9. } \\ & \text { 법률 제4365호, 1991.3.8. } \end{aligned}$ | 타법개정 |
| 3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 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 비에관한법률 | 1998.1.1. <br> 법률 제5453호, 1997.12.13. | 타법개정 |
| 4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 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 에관한 법률 | $\begin{aligned} & \text { 1998.1.1. } \\ & \text { 법률 제5454호, 1997.12.13. } \end{aligned}$ | 타법개정 |
| 5 | 공유수면매립법 | $\begin{aligned} & \text { 1999.8.9. } \\ & \text { 법률 제5911호, 1999.2.8. } \end{aligned}$ | 타법개정 |


| 연번 | 법령명 |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 제개정구분 |
| :---: | :--- | :--- | :---: |
| 6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br>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2003.1.1. <br> 법률 제6656호, 2002.2.4. | 타법개정 |
| 7 | 해양환경관리법 | 2008.1.20. <br> 법률 제8260호, 2007.1.19. | 타법개정 |
| 8 | 공유수면 관리 및 <br> 매립에 관한 법률 | 2010.10.16. <br> 법률 제10272호, 2010.4.15. | 타법개정 |
| 9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br> 따른 농어업인 등의 <br>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1.10.22. <br> 법률 제10890호, 2011.7.21 | 타법개정 |
| 10 | 지방세외수입금의 <br>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014.8.7. <br> 법률 제11998호. 2013.8.6. | 타법개정 |

4) 수산업법의 개정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수산업법이 제정된 이래 규범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법률은 다 음 표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제•개정내용을 연혁적으로 살펴 보면, 수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가 수산업법에 도입되었다가 일정한 성숙기간을 거치고 나서 개별법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1990년 전부개정법률)이나 연안수역의 정화(1995년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제도가 수산업법에 도입된 이후에 일정기간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장관리에 관한 독립된 규범들의 필요 성이 증대되면서 2000 년에 어장관리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그 밖 에도 수산물품질관리법, 기르는어업육성법, 원양산업발전법, 연근해어 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수산업법 에서 분화되어 간 법률이다.

즉, 수산업법은 지금까지 수산관련 법률들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고찰되며, 이는 수산업법이 수산에 관한 규범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산업법이 연혁적으로 수행하여 온 역할들은 향후 수산관련 법령의 개편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관점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표 수산업법 개정법률의 제•개정이유와 주요 제•개정 내용>7)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1 | 수산업법 <br> 1953.12.9. <br> 법률 제295호 <br> 1953.9.9. |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통합적 이 용으로 어민의 권익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
|  |  | - 수산업법의 제정 |
| 2 | 수산업법 <br> 1954.4.2. <br> 법률 제 313 호 <br> 1954.3.12. |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어업자원을 보호하 고 생산품에 대한 제품의 통제판매제도를 확립하여 생산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유리하게 처분함으로 써 어민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 - 제 48 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제 1 항제 1 호 |
| 3 | 수산업법 <br> 1963,7.1. <br> 법률 제1321호 1963.4.11. | 보호수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동어업을 3 종 으로 구분하며 허가어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고 지정원양어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어업조정명 령 - 보상 - 보조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
|  |  | - 제 8 조(면허어업), 제 10 조(공동어업의 면허), 제 11 조(주무부장관의 허가어업과 지정원양어업), 제 12 조(지방장관의 허가어업) |

[^1]|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  | - 제 6 장의 2 보호수면(제 63 조의 2 내지 제 63 조의 4 ) 신설 <br> - 제 7 장의 2 수산심의위원회(제 70 조의 2 , 제 70 조의 3 ) 신설 |
| 4 | 수산업법 <br> 1967.7.15. <br> 법률 제1365호 <br> 1963.7.15. | 현행법에 의하면 대형포경어업은 총톤수 100 톤이상 의 강철선만이 하게 되어 있으나, 고래자원을 개발 하기 위하여 톤수제한을 각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또한 수산제조업의 기술자에 대하여 자격고시제를 두어 면허제로 하는 등 현행 법률의 모순점을 개선 하여 어업생산증대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어업 조정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로 합리적인 자원보호를 기하려는 것임. |
|  |  | - 대형포경어업의 총톤수 100 톤이상의 제한을 없애 기 위하여 제 11 조(주무부장관의 허가어업과 지정 원양어업) 개정 <br> - 제44조(수산제조업의 허가•신고) 개정 |
| 5 | 수산업법 <br> 1965.12.30. <br> 법률 제1736호 <br> 1965.12.30. |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기타 법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허가한 어업을 제한, 정지하거나 취소 또는 어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법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타 수산에 관한 법 령을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 선의 계류나 면허•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 20 조(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정지•계선 또는 취소) 개정 |
| 6 | 수산업법 1966.4.23.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 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 법률 제 1780 호 <br> 1966.4.23. |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주무부장관 $\rightarrow$ 수산청장, 주무부 $\rightarrow$ 수산청, 본법 $\rightarrow$ 이 법, 각령 $\rightarrow$ 대통령령) |
| 7 | 수산업법 <br> 1971.7.23. <br> 법률 제2300호 <br> 1971.1.22. | 새로운 어구•어업방법 또는 어장의 개발, 원양어 업세력의 신장과 해외진출, 수족자원보호등을 위한 내수면어업의 중요성등으로 인한 허가어업과 원양 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등 현행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면허•허가권의 지방 이양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  | - 제 3 장 원양어업(제 23 조의 2 부터 제 23 조의 4 까지) 신설 <br> - 제4장 내수면어업(제 23 조의 5 부터 제 23 조의 8 까지) 신설 <br> - 제 11 장 수산조정위원회(제 70 조의 2 부터 제 70 조의 3 까지) 개정 |
| 8 | 수산업법 <br> 1972.10.7. <br> 법률 제2347호 <br> 1972.10.7. | 농어민 소득증대와 영세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산경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업권의 물권적 보 장과 어업경영의 합리화에 따른 조정의 원활을 기 하고자 현행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물의가 야기 되고 있는 일부 관계조항을 개정 또는 보완하여 어 업생산 증강을 기하려는 것임. |
|  |  | 면허어업의 면허기간 연장허가 규정(제14조제 2 항), 위생관리유통질서를 위한 어업조정명령(제48조제1항 제 12 호) 개정 |
| 9 | 수산업법 1976.7.1. <br> 법률 제2836호 1975.12.31. | 연근해어업등의 발전•변천에 따른 어업간의 질서 확립과 어업조사면에서의 제도개선이 불가피하여 이를 개선하고, 어장의 한계성에 비추어 지속적 어 업생산확보와 계획성 있는 자원어장의 종합적 이용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  | 관리대책을 강화하며, 지선어장은 어촌부락민의 공 동이익과 협업어장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증대와 직 결토록 하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안이 별도 제정 추진중에 있으므로 내수면어업 관계조항을 삭제하 려는 것임. <br> (1) 어장의 수심, 수면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등 면허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8)의 제정추진에 따라 내수면 어업관련 규정 정비 :제 8 조(면허어업)제 1 항제 3 호, 제 7 호 삭제, 개정, 제 4 장 내수면어업(제 23 조의 5 부터 제 제 23 조의 8 까지) 삭제. <br> 제9장 자원의 보호관리(제64조부터 제74조까지) 제67 조(어장의 병해방지를 위한 명령), 제70조(범칙어획물 의 판매의 금지), 제 71 조, 제 72 조, 제 73 조, 제 74 조 신설 |
| 10 | 수산업법 1981.6.21. <br> 법률 제3392호 1981.3.20. | 어민을 보호하고 수산종묘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 기 위하여 수산종묘생산업을 도지사의 허가어업으 로 신설하고, 기타 인•허가업무를 간소화하여 어 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  |  | 수산종묘생산업을 도지사 허가어업으로 신설 : 제 12 조(도지사의 허가어업) 제 1 항, 제 2 항 개정.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사료의 제조업에 대해서 는 사료관리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 제45조(수산제 조업의 신고) 단서 신설 |

8)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 1976.7.1., 법률 제2835호, 1975.12.31., 제정)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11 | 수산업 법 <br> 1985.7.1. <br> 법률 제3764호 <br> 1984.12.31. | 농수산물가공식품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물통조림제조업의 관리업무를 수산청에서 보건 사회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그밖에 불이익처분시의 청문절차와 일부벌칙의 과태료 전환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 수산물통조림제조업의 관리업무를 수산청에서 보건 사회부로 이관 : 제44조(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 고)를 개정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 산제조업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br> 청문절차 정비 : 제86조의2(청문) 신설 <br> 벌칙의 과태료 전환: 제94조의2(과태료) 신설 |
| 12 | 수산업법 <br> 1991.2.2. <br> 법률 제4252호 <br> 1990.8.1. | 어업면허제도와 어업피해보상제도를 개선하여 다수 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불법어업의 방지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  |  | -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제도 신설(제 10 조) : 1 년전부 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 농림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계 열기업(제1종양식어업에 한함) <br> - 어장관리 제도 신설 : 제37조(어촌계등의 어장관 리), 제 38 조(어장관리규약의 승인), 제 72 조(어장관 리에 관한 명령) <br> - 어획물운반업을 새로운 허가업종으로 신설(제46조) <br> - 유료낚시터 지정 및 낚시제한구역 제도 신설(제 55조, 제56조) <br> - 육성수면의 지정•관리 제도 신설(제70조, 제71조) <br> -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및 취소의 경우에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 :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에 대해서도 적용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13 |  |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수산업법을 현실에 맞고 어업인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어업인 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수면의 입체적 활용을 통 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 수산업법 <br> 1996.12.31. <br> 법률 제5131호 <br> 1995.12.30. | - 양식업을 양식대상품종별로 구분 : 해조류양식어 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 업(제8조) <br> - 공동어업을 세분 : 자연산패류등의 채취를 목적 으로 하는 마을어업과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협 동양식어업으로 세분(제 8 조), 제 9 조(마을어업등의 면허) <br> -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제9조의2(영어조합법인의 육성) <br> - 한정어업면허제도 신설 : 제 14 조의 2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br> - 허가어업에서 신고어업으로 전환 : 육상양식어업 과 육상종묘생산어업(제 41 조제 2 항제 2 호, 제 3 호) <br> - 총허용어획량 제도 신설 : 제54조의2(총허용어획 량의 설정) <br> - 연안수역의 정화 규정 신설 : 제72조의2(연안수역 의 정화) <br> - 수산자원의 조성 제도 신설 : 제 79 조의 2 (수산자원 의 조성), 제79조의3(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 제 79조의4(사업등의 위탁) <br> - 수산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 시•군•구에 도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9 조), 어업분쟁조정 기능 추가(제90조제 1 항제 3 호,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  | 제4호 신셜) <br> -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 제91조 의2(과징금처분) <br> - 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 제93조의2 <br> - 시 - 도지사 권한을 시 - 군 - 구청장으로 이양 |
| 14 | 수산업 법 <br> 1999.4.15. <br> 법률 제5977호 <br> 1999.4.15.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육상 양식어업의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각 종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의를 도 모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 - 기준면적 이상으로 어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 2 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한 규정 폐지 : 제24조 삭제 <br> -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등록제 도 전환 |
| 15 | 어장관리법 <br> 2001.1.29. <br> 법률 제6257호 <br> 2000.1.28. | 제정이유 <br> 최근 어장의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의 생산성 과 양식 수산물의 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어장휴식 및 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어장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 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  | ※ 어장관리법 제정 <br> -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삭제 : 제72조 <br> - 연안수역의 정화 삭제 : 제 72 조의 2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16 | 수산업법 <br> 2001.10.1 <br> 법률 제6398호 <br> 2001.1.29.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 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실하게 운영되는 영 어조합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 보완하려는 것임. |
|  |  | -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기산 등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금지 : 제73조 |
| 17 | 수산물품질 <br> 관리법 <br> 2001.9.1. <br> 법률 제6399호 <br> 2001.1.29. | 제정이유 <br> 다수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에 대한 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수산물가공산업을 육 성하여 수산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위 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국제관 리기준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상품 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  |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 <br> - 수산물가공업 : 제 49 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
| 18 | 기르는어업 <br> 육성 법 <br> 2003.7.15. <br> 법률 제6611호 <br> 2002.1.14. | 제정이유 <br>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외 어업여건 상 이용가능한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산물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개정내용 |
|  |  |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물의 생 산을 도모하는 한편，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제도화 된 진료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 급하려는 것임． |
|  |  |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 <br> －제79조의2（수산자원의 조성），제 79 조의 3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부담금），제79조의4（사업등의 위탁） 삭제 |
| 19 | 수산업법 <br> 2005．7．1． <br> 법률 제7314호 <br> 2004．12．31．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陸上種苗生産漁業）의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인한 적조피해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양 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상양 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 어업으로 전환하는 한편，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 전과 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 하는 어선의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게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 －허가어업으로의 전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 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 환（제 41 조제 2 항제 2 호，제 3 호） <br> －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신설 ：제72조（어업의 자율 관리지 원） |
| 20 | 내수면어업법 2005．10．1． <br> 법률 제7477호 2005．3．31． |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魚道）를 설치하여 회유성（回游性）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낚시 등 유어행위（遊漁行爲）에 대 한 제한 등 유어질서 확립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또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개정내용 |
|  |  | 는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
|  |  | －내수면에서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魚道）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제79조제 1 항제 4 호 삭제 |
| 21 | 수산업법 <br> 2007．1．3． <br> 법률 제8226호 <br> 2007．1．3． | 신기술의 개발 및 고부가가치의 양식어종 발굴 등 시험어업을 장려를 위하여 어업권자와 마찬가지 로 시험어업을 하는 자에게도 어업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 －시험어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는 자 에게도 어업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 45조제2항 신설 |
| 22 | 수산업법 <br> 2007．4．11． <br> 법률 제8377호 <br> 2007．4．11．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 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 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br>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 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 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br>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윕게 읽고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 률이 되도록 하여，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 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br> - 한글식 표현 <br> - 조문정리 <br> - 한자병용 |
| 23 | 수산업법 <br> 2007.7.27. <br> 법률 제8564호 <br> 2007.2.27. | 폐기물 배출해역에서 면허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상요구로 인한 정책집행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동식물에 대한 유통체계의 관리•개선을 위한 매매장소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 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 전•관리하고 수면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 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와 수산자 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알맞게 관리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 보완하려는 것임. |
|  |  | -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 제57조(유어장의 지정등) 제2항 신설 <br> -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규정 신설 : 제 58 조의 2 <br> -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 : 제67조의2(수산자원보호 구역의 관리), 제67조의3(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서의 행위제한 등) |
| 24 | 원양산업발전법 2008.2.4. | $\diamond$ 제정이유 <br> 「수산업법」과는 별도로 이 법을 제정하여 원양산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개정내용 |
|  |  | 업 관련 규정을「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수산자원 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하며，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 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2009．4．22． | ※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br> ［시행 2010．4．23．］［법률 제9627호，2009．4．22．，제정］ －「기르는 어업육성법」，「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 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 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 로 통합 ：제 4 장 기르는어업의 육성（제 50 조부터 제 56 조까지），제 7 장 수산업의 육성（제 74 조，제 75 조），제 8 장 수산발전기금（제 76 조부터 제 80 조까지）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수산자원 관리법」으로 분리 <br> －한시어업제도 신설 ：제42조（한시어업허가） |
| 27 | 수산업법 <br> 2010．4．23． <br> 법률 제9948호 <br> 2010．1．25． |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 어업에 포함하고，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보호를 위해 어장의 수 심，관리선의 정수•사용기준 등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어업인 의 안전사고예방과 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 치성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관리선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선의 규모와 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이동성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에 사용하 는 어선에 대하여는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 하는 경우 8 톤까지 증톤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  |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 : 제 2 조제 6 호 신설, 제 8 조(면허어업)제 1 항, 제 13 조의 2 (외해양식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제40조의2(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적용) <br> - 어장의 수심을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 록 함 : 제8조제4항 단서 |
| 28 | 수산업법 <br> 2010.11.18. <br> 법률 제10292호 <br> 2010.5.17. | 현재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 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의 수 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 고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에 적극 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br> 따라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 - 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 하는 대신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기르는어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일 부를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55조 삭제, 법 제93조제2항). |
|  |  | - 기르는어업센터 규정 삭제 : 제55조 삭제 <br> - 권한의 위임과 위탁 규정 개정 :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위탁(제93조) 개정 |
| 29 | 수산업법 2011.10.26. <br> 법률 제10943호 2011.7.25. |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4월 1일 을 어업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 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 - 어업인의 날 관련 규정 신설 : 제 3 조의2(어업인의 날)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개정내용 |
| 30 | 수산자원관리법 2012．1．26． <br> 법률 제10944호 2011．7．25． |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 립된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 단으로 변경하고，공단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93조제2항 |
| 31 | 연근해어업의 <br> 구조개선 및 <br> 지원에 관한 법률 <br> 2012．7．26． <br> 법률 제10947호 <br> 2011．7．25． | 제정이유 <br> 해양환경 및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연근해어업의 지 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r>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제75조）개정 ：어업 구조조정의 촉진（제 75 조）개정 |
| 32 | 수산업법 <br> 2013．12．19 <br> 법률 제11566호 <br> 2012．12．18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 의 근거를 마련하고，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국민중심 원칙허용 인 －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遊漁場）지정 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
|  |  | －어선의 선복량 제한 규정 신설（제63조의2） <br>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규정 신설（제64조의 2 ） <br>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규정 신설（제64조의3） |
| 33 | 수산업법 2013．8．13． <br> 법률 제12084호 | ＂계리하다＂라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이해하기 쉬 운 표현인＂회계처리하다＂로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공포번호 공포일자 | 제－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개정내용 |
|  | 2013．8．13． | －계리를＂회계처리＂로 개정 ：제 78 조제 3 항，제4항 |
| 34 | 수산업법 <br> 2015．3．25． <br> 법률 제 12541 호 <br> 2014．3．24． | 패류양식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害敵生物）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해적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br> 어선원의 복지 향상과 어선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공간을 어선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근해어업 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총톤수 8 톤 이상에서 10 톤 이상으로 하는 등 연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 선의 선복량을 상향 조정하며， <br>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한 수산동물에 비하여 해당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허가의 건수가 적은 경우에도 한시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br> 어업면허 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 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2천만 원에서 1 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  |  | －어선의 선복량 상향 조정 ：제41조 <br> －한시어업의 합리적 운용 ：허가건수가 적은 경우 에도 한시어업허가 가능하도록 개정 ：제 42 조제 3 항제3호 <br>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 ：2천만원에서 1 억원으로 （제91조제1항） |
| 35 | 수산업법 <br> 2015．1．16． <br> 법률 제12823호 <br> 2014．10．15． | 「수산업법」제 23 조제 1 항은＇어업권의 공유자는 다 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분처분 또는 담 보 제공 시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br> 담보 제공 시 「수산업법」 제 23 조에 따라 공유자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  | 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지분이전 시 다 시 지분이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함. <br> 따라서 담보의 제공도 지분처분의 개념에 포함되 며 공유자의 담보 제공 동의 시 담보제공에 따른 경매로 인한 지분이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 므로 경매로 인한 지분 이전인가 신청 시 다시 공 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생략하 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함. <br>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 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br>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정•개정 시의 경 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 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br>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 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 년당 1 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 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 을 확보하려는 것임. |
|  |  | - 법정형 정비 : 제97조제 1 항, 제 98 조 및 제 99 조의 벌금형인 "2천만원", " 500 만원", " 300 만원"을 각 각 " 3 천만원", " 2 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수정 |
| 36 | 수산업법 2015.1.20. <br> 법률 제13054호 | 현행법상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보 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 - 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 - 개정내용 |
|  | 2015.3.27. | (中略) <br> 이에 국내산을 비롯한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내산 수산 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 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br> 따라서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관리•개선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산 물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 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 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 법률 을 제정하려는 것임. |
|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용도 규정의 개정 : 제77조, 제79조 개정 |
| 38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5.12.23. <br> 법률 제13383호 2015.6.22. | $\diamond$ 제정이유 <br>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 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 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 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개정내용 |
|  |  | 련 인프라를 구축하고，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 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 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  |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 <br> －어업인의 날 삭제 ：제3조의 2 <br> －수산진흥종합대책 규정 삭제 ：제74조 <br> －수산발전기금 규정 삭제 ：제8장（제76조부터 제 80 조까지） |
| 39 | 수산업 법 <br> 2015．12．23． <br> 법률 제13384호 <br> 2015．6．22． |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 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어업권자의 부담을 완화하 는 한편， <br> 현행법은 일부 허가어업의 정수（定數）를 정하도 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신규 어업의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허가 요건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허가의 정수가 있 는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 고，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 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보도록 함． |
|  |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규정 신설 ：제41조의 2 <br>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 ：제90조제6항，제7항 신설 |
| 40 |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2016．6．23． 법률 제13385호 2015．6．22． | 제정이유 <br> （前略） <br> 우량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보급을 활 성화 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육 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 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


| 연번 | 법령명 <br> 시행일자 <br> 공포번호 <br> 공포일자 | 제•개정이유 |
| :--- | :--- | :--- |
|  |  | 주요 제•개정내용 |

(2) 수산업법과 수산관련 법률의 연혁적 관계

1) 수산업법과 수산관련 법률의 입법연혁 관계표

수산업법 제정 이후 수산업법에서 분화되거나 수산업법으로 통합된 법률의 입법연혁 관계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보 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나, 전체적 관계를 알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 하여 관계가 드러나는 내용으로 표를 작성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 은 아래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 표 수산업법과 수산관련 법률의 입법연혁 관계표>

| 수산업법 |  |  |
| :---: | :---: | :---: |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 ※ 어장관리법 |
| 제정 | [시행 2008.2.4.] | [시행 2001.1.29.] |
| [시행 1976.7.1.] | [법률 제8626호, | [법률 제6257호, |
| [법률 제2835호, | 2007.8.3., 제정] | 2000.1.28., 제정] |
| 1975.12.31., 제정] |  |  |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br> $\rightarrow$ ※ 내수면어업법 <br> [시행 2000.7.29.] <br> [법률 제6255호, <br> 2000.1.28., 전부개정] |  |  |
| :---: | :---: | :---: |
| $\bigcirc$ 내수면관련 규정 이관 | 제 3 장 원양산업 제 1 절 원양산업의 허가 등 : 제6조부터 제 17조까지 | ○ 제 3 장 어장의 정화. <br> 정비(제 12 조부터 <br> 제19조까지) |
|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2001.9.1.] [법률 제6399호, 2001.1.29., 제정] $\rightarrow$ ※ 식품산업진흥법 <br> [시행 2012.7.22.] [법률 제10889호, 2011.7.21., 일부개정] |  |  |
| ○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취지에 맞추어 수산가공품의 생산 지원 및 수산 물가공업에 관한 규정을 이관 <br>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19조의2) <br> -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제19조의4) <br>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제19조의5) |  |  |
| ※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 2003.7.15.] [법률 제6611호, 2002.1.14., 제정] $\rightarrow$ ※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br> [시행 2010.4.23.] [법률 제9627호, 2009.4.22., 제정] |  |  |
| $\bigcirc$ 관련규정의 이관 |  |  |
|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 1999.12.7.] [법률 제6029호, 1999.9.7., 제정] $\rightarrow$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2.7.26.] [법률 제10947호, 2011.7.25., 제정] |  |  |
| ○ 수산업법 제75조 개정 <br> $\bigcirc$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규정 |  |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br> [시행 2012.9.10.] [법률 제10458호, 2011.3.9., 제정] |  |  |


| O 허가어업 중 낚시업 규정 삭제(제9조제 1 항제 5 호) |
| :--- |
| $\bigcirc$ 법 적용범위를 바다로 확대 |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시행 2014.2.14.] [법률 제12083호, 2013.8.13., 제정] |
|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신고어업의 |
| 하나로 정하고 있던 "관상어양식어업"을 새로운 법률로 규율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
| [시행 2016.6.23.] [법률 제13385호, 2015.6.22., 제정] |
| ○ 허가어업 중 종묘생산어업 규정 삭제(제41조제 3 항제 3 호) <br> ○ 법 적용범위를 내수면으로 확대 <br>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br>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제정] <br> 기본법 제6장 수산발전기금 신설(제46조부터 제 50 조까지) |

2)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서는 1971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공공수면'과 ‘내수면’에 관한 정의 규정(제2조제6호, 제7호), 면허어업 중 담수조류 채취어업, 제4종 공동어업(제8조제1항제3호, 제7호)과 허가어업 중 투 망어업(제 12 조제 1 항제 11 호)에 관한 규정, 제 4 장 내수면어업(제 23 조의 5 부터 제23조의8까지)등이 신설되면서 수산업법의 규율체계에 편입되 게 되었다.

내수면어업에 관한 규정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제정 추진을 고려하여 197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으로 이관되었다.
<표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left.$$
\begin{array}{|c|c|c|c|}\hline \begin{array}{c}\text { 수산업법 } \\
\text { [시행 1971.7.23.] } \\
\text { [법률 제2300호, } \\
\text { 1971.1.22., } \\
\text { 일부개정] }\end{array}
$$ \& \begin{array}{c}수산업법 <br>
[시행 1976.7.1.] <br>
[법률 제2836호, <br>
1975.12.31., <br>

일부개정]\end{array} \& 수산업법\end{array}\right]\)| 수산업법 |
| :---: |


| 23조의5), 내수 면어업의 제한 명령(제23조의 6), 낚시(제 23 조 의7), 자원유지 를 위한 시설 (제23조의8) |  |  | 상어양식어업"을 <br> 새로운 법률로 규율 |
| :---: | :---: | :---: | :---: |
|  | ○ 수산업법 중 삭제 규정을 수용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시행 2012.9.10.] [법률 제10458호, 2011.3.9., 제정] | ※ 낚시 관리 및 <br> 육성법 제정 <br> [시행 2012.9.10.] <br> [법률 제10458호, <br> 2011.3.9., 제정] |
|  |  | ○ 낚시 관련 규정 수용 | $\bigcirc$ 낚시 관련 규정 수용 |

3) 수산물가공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수산물가공업은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일정기간 동안에는 수산제 조업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왔고, 제정법 제44조는 '통조림제조업 과 어유비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가공업 의 종류가 확장되고, 수산제조업 중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지방장관 에게 신고하도록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정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고, 2001년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은 수산물품 질관리법에서 규율되다가, 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들어지면서 수산물가 공업 관련 규정이 2011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되면서 등록제가 신고제로 개정되었다.
<표 수산물가공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 수산업법 <br> [시행 1985.7.1.] <br> [법률 제3764호, <br> 1984.12.31., <br> 일부개정] | 수산업법 <br> [시행 1999.4.15.] <br> [법률 제5977호, 1999.4.15., 일부개정] | 수산업법 <br> [시행 2001.9.1.] <br> [법률 제6399호, <br> 2001.1.29., <br> 타법개정] | 수산업법 |
| :---: | :---: | :---: | :---: |
| 제44조 (수산제조 업의 허가 및 신 고) : 통조림제조 업의 소관을 보 건사회부로 이관 (1984.12.31.) <br> ※ 용어의 변경 (수산제조업 $\rightarrow$ 수산물가공업) <br> [시행 1996.12.31.] <br> [법률 제5131호, 1995.12.30., 일부개정] | 수산 물가 공업 <br> 의 허가를 <br> 등록으로 개정 <br> (제49조제 1 항) | 수산물가공업의 <br> 등 록 • 신 고에 <br> 관해서는 따로 <br> 법률로 정함 : <br> 제49조 개정, <br> 제 50 조 삭제, <br> 제 51 조 제 2 항 <br> 삭제 |  |
|  |  | ※ 수산물품질 <br> 관리법 제정 <br> [시행 2001.9.1.] <br> [법률 제6399호, <br> 2001.1.29., 제정] | ※ 식품산업진흥법 <br> [시행 2012.7.22.] <br> [법률 제10889호, <br> 2011.7.21., <br> 일부개정] |
|  |  | 수 산 물가 공업 <br> 의 등록 및 신 <br> 고 : 제 3 장 수 <br> 산 물가 공 업의 <br> 육성 및 관리 <br> ( 제 15 조 부 터 <br> 제21조까지) | ○농림수산식품 부의 출범취지 에 맞추어 수 산가공품의 생 산 지원 및 수 산 물가 공업에 관한 규정을 이관 <br> -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시책 의 마련 |


|  |  | (제19조의2) <br> - 수산가공품 생 <br> 산 등의 지원 <br> (제19조의4) <br> - 수산물가공업의 <br> 신고 등 <br> (제19조의5) |
| :--- | :--- | :--- | :--- |

4) 어장관리에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어장의 병해방지를 위한 명령, 연안수역의 정화 등에 관한 수산업법 의 규정이 어장관리법 제정으로 이관되게 되었다.

| 수산업법 <br> [시행 1976.7.1.] <br> [법률 제2836호, <br> 1975.12.31., 일부개정] | 수산업법 <br> [시행 1996.12.31.] <br> [법률 제5131호, <br> 1995.12.30., 일부개정] | 수산업법 <br> [시행 2001.1.29.] <br> [법률 제6257호, <br> 2000.1.28., 타법개정] |
| :---: | :---: | :---: |
| 어장의 병해방지를 <br> 위한 명령 : 제67조 <br> 신설 | 연안수역의 정화 : <br> 제72조의2 신설 | 어장관리에 관한 명 <br> 령 삭제 : 제72조 <br> 연안수역의 정화 <br> 삭제 : 제72조의2 |

5) 기르는어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부담금, 사업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199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가 2002년 기르는어업육 성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수산업법에서 삭제되어 이관되었다. 기르는어업육성법의 관련 규정은 2009년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되고, 기르는어업육성에 관한 규정은 2009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의해 수산업법에 이관되고, 나머지 제3장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규정은 2011년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되고, 기르는어업육성법 은 폐지되었다.
\(\left.$$
\begin{array}{|c|c|c|}\hline \begin{array}{c}\text { 수산업법 } \\
\text { [시행 1996.12.31.] [법률 } \\
\text { 제5131호, 1995.12.30., } \\
\text { 일부개정] }\end{array}
$$ \& \begin{array}{c}수산업법 <br>
[시행 2003.7.15.] [법률 <br>
제6611호, 2002.1.14., <br>

타법개정]\end{array} \& 수산업법\end{array}\right]\)| (제79조의2부터 |
| :---: |
| 제79조의4까지 |
| 삭제 |

6) 원양산업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 수산업법 <br> [시행 1963.7.1.] [법률 제1321호, 1963.4.11., 일부개정] | 수산업법 <br> [시행 1971.7.23.] [법률 제2300호, 1971.1.22., 일부개정] | 수산업법 <br> [시행 2008.2.4.] [법률 제8626호, 2007.8.3., 타법개정] |
| :---: | :---: | :---: |
| 제 11 조 지정원양어업 신설(1963.4.11.) | 제 3 장 원양어업(제 23 조의 2 <br> 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 - 해외수역(제2조제 <br> 7호) 삭제 <br> - 원양어업규정 <br> 삭제(제43조제1항 <br> 제2호) |
|  | - 원양어업의 허가 <br> (제23조의2) <br> - 원양어업허가의 특례 |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br> (2007.8.3.) |
|  | $\begin{gathered} \text { - 보고(제23조의4) } \\ \text { (1971.1.22.) } \end{gathered}$ | 제 3 장 원양산업 <br> 제1절 원양산업 <br> 의 허가 등 : <br> 제6조부터 <br> 제 17 <br> 조까지 |

2.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동향
(1) 개 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산업법은 잡는 어업(채포•포획 어업)과 기 르는어업(양식어업)을 행정행위 양식에 따라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면허어업에서는 기르는어업의 종류가 잡 는 어업에 비하여 많다고 할 수 있다.

제19대국회에서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 는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체계를 정

비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양식업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등 양식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위해 양식업 면허에 대 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9)을 담고 있는 정부제출법률안 인 「양식산업발전법」이 의안번호 13477호로 접수되었으며, 또한 의원 발의법률안으로서 의안번호 15788호로 접수되었다.10)

먼저, 정부제출법률안은 2014년 12월 31일 제안되어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에 2015년 1월 2일 회부되어 2015년 4월 24일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었다.
"양식업의 관리 및 행정에 관한 사항11)을 모아 단일법을 제정하고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양식업의 생산성 증대, 양식기술 개발 등 양식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12)되기도 하나, "면허의 심사•평가 13)도입, 어업회사법인 에 대한 출자를 통한 어업인 아닌 자의 양식업 참여, 마을어업면허를 양식업면허로 전환하는 데 따른 기존 입어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어업인 등의 우려"14)가 제기되며, "양식산업 발 전을 위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근거를 두지 않은 점, 양식 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어장관리법과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점,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의 누락 등"15)은 미흡한 부분 으로서 수정 -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다.
9)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발언, 제 332 회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제5호, 2015년 4월 24일, 국회사무처, 7면.
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16년 11월 7일 최종 접속 확인. 의원발의법률안은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이다.
11)
12) 전문위원 석영환 발언, 제 332 회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제5호, 2015년 4월 24일, 국회사무처, 9 면
13)
14) 전문위원 석영환 발언, 제 332 회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제5호, 2015년 4월 24일, 국회사무처, 9 면
15) 전문위원 석영환 발언, 제 332 회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제5호, 2015년 4월 24일, 국회사무처, 9면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안효 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이 2015년 6월 24일 접수되었 으나，정부제출법률안과 동일하게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하여 2016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 }^{16)}$
（2）양식산업발전법안의 주요내용
양식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양식산업발전법안 중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이 수산관계 법령체계 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검토하고자 한다．18）
（1）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의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을，시•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19）

16）법률안의 심사단계에 관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참조．2016년 11월 7일 최종접속 확인．
17）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양식산업육성법」제정 및 친환경양식 연구，2012．6．，농 림수산식품부，제 18 면～제 23 면에서는 양식산업발전법안의 내용에 수산업법，내수면 어업법，어장관리법 중 양식에 관한 사항을 모두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제 1 안（개혁안），제 2 안（통합개혁안），제 3 안（통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8）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미흡한 부분이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서 보완되었기 때문에，향후 검토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은 안효대의원 대표발 의 법률안으로 한다．이하 인용하는 주요내용에 관한 부분은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법 률안의 주요내용을 인용한 것으로，개별 주요내용에 관해서도 출처표시를 하도록 한다． 19）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안 중 주요내용 가．，법률안 제 3 면，인용．

주요내용인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수산업법에 있던 기르는어업 의 육성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제50조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제 51 조 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획, 내수면어업법 제5조 기본계획 수립의 규정 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래 표에서 수산업법상의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과 양식산업발전법안상의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관한 법안을 비교하여 보면, 수산업법상의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기본 적 내용을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 승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과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비교>

| 수산업법 |
| :---: |
| 제50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
| (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
| 육성•발전을 위하여 5 년마다 기르 |
| 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
| 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 <개정 2013.3.23.> |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
| 항이 표한되어야 한다 |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르는어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 • 발 전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 88 조 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제 5 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1) 해양 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 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 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업의 구조조정 및 지원에 관 한 사항
4.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 발에 관한 사항
5.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 한 사항
6.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 성화에 관한 사항

| 수산업법 | 양식산업발전법안 |
| :---: | :---: |
|  |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 <br> 에 관한 사항 <br>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br>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  |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양식산업발전심의회 설치
（3）「수산업법」및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업 관련 규정 통합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 등 해수면 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대 한 면허，「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에 대한 허가에 관 한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정하고，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 의 관리，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해 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20)}$
즉，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어업에 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수산관련 법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법률의 내용도 크게 변경되 게 되었고，두 법률의 개편도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 중에는 육상양식어업（동법 시행령 제9조제 1항제5호）이 있으나，동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양식산 업발전법에 따라 하위법령 차원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4）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어업회사법인도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0）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안 중 주요내용 다．，법률안 제 2 면－제 3 면，수 정 후 인용，양식산업발전법안 주요내용 다．에서＂「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업＂ 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r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으로＂패류양식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패류양식어업＂으로 수정하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해수 양식업＂은＂r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수정한 후 인용하였다．
(5)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 도입
"(ㄱ)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 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 해 심사•평가를 실시함."21)
"(ㄴ)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어장 관리에 대한 양식업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여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양식업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22)}$
(6) 양식산업의 육성(제6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조성하며, 양식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수 립 • 추진할 수 있도록 함."23)

## 3.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따른 수산업법의 변화

(1) 어업의 범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수산업법상 양식 어업과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어업이 통합되면, 각 내용이 두 법에서 삭제되게 된다.
21)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안 중 주요내용 마., 법률안 제3면, 인용.
22)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안 중 주요내용 마., 법률안 제 3 면, 인용.
23)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안 중 주요내용 바., 법률안 제3면-4면, 인용. 주요내용 바.는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등"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안 제6장에는 "양 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차를 수정하였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통합되는 양식어업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산업법에서 어업은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제2장 면허어 업，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해수면에서의 면허어업

| 면허어업 <br> （제8조 <br> 제1항） | 1．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 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 :---: | :---: | :---: |
|  | 2．해조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 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  | 3．패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 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  | 4．어류등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 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  | 5．복합양식어업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 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 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 종 이상 복합 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  | 6．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 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이내 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 는 정착성（定着性）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
|  | 7．협동양식어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 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 |


|  | 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br>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 <br> 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
| :---: | :--- | :--- |
|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br>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 <br>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br> 양식하는 어업 |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양식어업．제1호 정치망어업，제6호 마을어업은 포 획하거나 포획 • 채취하는 어업）

2）내수면에서의 면허어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면허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 면허어업 <br> （내수면 <br> 어업법 <br> 제6조제1항） | 1．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 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 :---: | :---: | :---: |
|  | 2．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  | 3．공동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 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 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

（2）허가어업

허가어업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1조 중 제1항 근해어업，제2 항 연안어업，제 3 항제 1 호 구획어업은 기르는 어업에 대응되는 잡는 어 업이라 할 수 있고，동조 제 3 항제 2 호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양식어업이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24）이전에는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 에＇종묘생산어업＇이 규정되어 있었으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이를 수산종자생산업으로 규율하게 됨에 따라 수산업법에서는 삭제되었다．

원양어업은 수산업법상의 어업은 아니지만，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규율되는 어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해수면에서의 허가어업

| 허가어업 <br> （제41조） | 근해어업 （제1항） | 총톤수 10 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 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 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 업（해양수산부장관 허가） |
| :---: | :---: | :---: |
|  | 연안어업 <br> （제2항） | 무동력어선，총톤수 10 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 업 및 제 3 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시－도지사 허가） |
|  | 구획어업 <br> （제3항제1호） |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 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 톤 미 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  | 육상해수양식어업 （제3항제2호）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시장•군 수•구청장 허가） |
|  | 수산종자생산업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 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 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 종자로 판매하는 사업 |

[^2]

* (음영으로 처리된 제3항제2호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양식어업이다.)

2) 내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 허가어업 | 1. 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 :---: | :---: | :---: |
|  | 2. 종묘채포어업 |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 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
|  | 3. 연승어업 |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 는 어업 |
|  | 4. 패류채취어업 |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


|  | 6．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 <br> 하는 어업 |
| :--- | :--- | :--- |
|  | 7．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 <br> 는 어업 |

（3）신고어업

1）해수면 신고어업

|  | 나잠어업（裸潛漁業） <br> （동법 시행령 제29조 <br> 신고어업 <br> （수산업법 <br> 제47조） | 제1항제1호） |
| :---: | :--- | :--- |
|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허 얼 엇•흥을 사용하여 패류，해조류， <br>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br> 채취하는 어업 |  |
| （동법 시행령 제29조 <br> 제1항제2호） |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 <br> 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 <br> 획•채취하는 어업 |  |

2）내수면 신고어업

내수면에서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 신고어업 （내수면 어업법 제11조 제1항） | 1．투망어업 <br> （동법 시행령 제9조 제 1 항제 1 호）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 는 어업 |
| :---: | :---: | :---: |
|  | 2．어살어업 <br> （동법 시행령 제9조 제 1 항제 2 호） |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  | 3．통발어업 <br> （동법 시행령 제9조 제 1 항제 3 호） |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 는 어업 |


|  | 4. 외줄낚시어업 <br> (동법 시행령 제9조 <br> 제1항제4호) |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 :--- | :--- | :--- |
|  | 5. 육상양식어업 <br> (동법 시행령 제9조 <br> 제1항제5호)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 <br> 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  | 사유수면에서의 면허 <br> 어업, 허가어업, 신고 <br> 어업 |  |

(3)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따른 수산업법의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분화되어 개별법이 될 경우에 수산업법에는 다 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을 어업-어획물운반업 - 수산물가공업을 말 하는 것으로 하고(제2조제1호), 그 중에서 어업을 "수산동식물을 포 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2호). 어업의 개념 중에서 최근에 규정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자면, 전통적 으로 어업은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으로 이 해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 어업개념에서 양식을 분리하여 별개의 산업으로 관리•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양식산업발전법안의 전제가 되 는 것이기 때문에 어업개념 중에서 "양식"이 삭제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산업법의 면허어업에서 양식어업을 삭제 하고, 허가어업 중에서도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삭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식어업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정들이 삭제될 것이 다. 제4조의 어장이용계발계획에 관한 규정도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양

식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에 수산업법에서 이를 둘 특별한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장 면허어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업권 관련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양식업권"으로 규정하고, 수산업법에서는 어업권 에 관해서는 "양식업권"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 각된다. 다만, 면허어업 중 수산업법에 남게되는 정치망어업과 마을어 업의 어업권이 양식업의 "양식업권"과 앞으로도 동일한 내용을 가진 권리로서 생각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4 장 기르는어업의 육성(제 50 조부터 제 56 조까지)은 양식업에 관한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에 수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수산업법 <br> [시행 2016.6.23.] [법률 제13385호, 2015.6.22., 타법개정] | 비 고 |
| :---: | :---: |
| 제 1 장 총칙 | - 제 2 조제 1 호, 제 2 호 개정 <br> - 제 2 조제 5 호, 6 호, 7 호 삭제 <br> - 제 2 조제 14 호 개정 <br> -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삭제 |
| 제 2 장 면허어업 | - 양식어업에 관한 규정 삭제 : 제 8 조(면허어업) 제 1 항제 2 호부 터 제 5 호까지 삭제, 제 7 호 및 제 8 호 삭제 <br> - 제 13 조의 2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삭제 <br> - 제28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 역의 지정 등) 삭제 <br> - 제 40 조의 2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적용) 삭제 |

제 3 장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 분석

| 제3장 허가어업과신고어업 | ○ 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삭제 <br> - 제 41 조(허가어업) 제 3 항제 2 호 삭제, 제4항제3호 삭제 |
| :---: | :---: |
| 제4장 기르는어업의육성 | ○ 제 4 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삭제 <br> - 제50조(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br> - 제51조(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 <br> - 제52조(기본계획또는시행계획의 수립을위한기초조사) <br> - 제53조(기르는어업개발지구) <br> - 제54조(기르는어업기술개발등에 대한지원) <br> - 제55조 <br> - 제56조(기르는어업의육성) |
| 제5장 어획물운반업 |  |
| 제6장 어업조정등 |  |
| 제7장 수산업의육성 |  |
| 제8장 삭제<2015.6.22> |  |
| 제9장 보상 - 보조및재결 |  |
| 제 10 장 수산조정위원회 |  |
| 제 11 장 보칙 |  |
| 제 12 장 벌칙 |  |

# 제 4 장 수산관련 법령의 체계 개편방안 

## 1.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개편

(1) 수산조정위원회 제도의 개편

수산조정위원회 제도는 1963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25)로 도입된 수산심의위원회 제도를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정 및 수질오염 에 의한 배상에 관한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71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26)로 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이 확대되어 왔다.
<표 수산심의위원회 규정>

| 수산업법 |
| :--- |
| [시행 1963.7.1.] [법률 제1321호, 1963.4.11., 일부개정] |
| 제7장의2 수산심의위원회 |
| 제70조의2 (수산심의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 • 보상 및 재정에 관 |
| 하여 주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에 수산심의위원회 |
| 를 둔다. |
| 제70조의3 (세칙) 수산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 |
| 한다. |

25) 수산업법 [시행 1963.7.1.] [법률 제1321호, 1963.4.11., 일부개정]
26) 수산업법 1971.7.23., 법률 제2300호, 1971.1.22., 일부개정 제70조의2 참조.

| 수산업법 <br> [시행 1971.7.23.] [법률 제2300호, 1971.1.22., 일부개정] | 수산업법 <br> [시행 2016.6.23.] [법률 제13385호, 2015.6.22., 타법개정] |
| :---: | :---: |
| 제 11 장 수산조정위원회 제70조의2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1)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정 및 수질오염에 의한 배상에 관한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 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중앙수 산조정위원회를, 시 - 도에 시 - 도수 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br> [전문개정 1971•1•22] | 제 10 장 수산조정위원회 제88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 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 르는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 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 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
| (2) 제 6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한다. <br> 1. 수질오염의 원인 및 피해상황 <br> 2. 손해액의 평가 <br> 3. 배상액의 사정 <br> 4.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2 인이 상일 때의 배상비율 <br> 5. 기타 배상에 관련된 사항 <br> (3)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을 위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 할 때에는 시설의 경영자나 피해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 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br> [전문개정 1971•1•22] |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 <개정 2010.1.25., 2011.7.25., 2012.12.18., 2013.3.23.> <br> 1. 어업별 분쟁의 조정 <br> 2.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 쟁의 조정 <br> 3. 기본계획의 심의 <br> 4. 외해양식어업면허 신청자에 대 한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의 심의 <br> 5.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조정 <br> 5 의 2 . 제 6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선복 량 제한의 심의 <br>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 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br> 7.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


|  | $\begin{aligned} & \text {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 \\ & \text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 } \\ & \text {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 \\ & \text { 의 심의 } \\ & \text { (2) ~ (5) (생략) } \end{aligned}$ |
| :---: | :---: |
|  | 제 90 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 <br> 영) (1) 제 88 조에 따른 수산조정위 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br> (2)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19 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br> (3)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 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 정 2013.3.23.> <br> (4)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5) 삭제 <2015.6.22.> <br> (6) 제 89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 다. <신설 2015.6.22.> <br> (7)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

1）심의기능 조정
위 규정의 비교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현행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수산업법 자체의 역할범위를 넘 어서고 있다는 점이다．외해양식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 법과의 관계에서 개정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이나，제 89 조제 1 항 각 호의 내용 중에서 제6호 중，＂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제 8 호＂그 밖에 이 법，「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는 수산업법의 규율범 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의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 89 조제 1 항제 3 호는＂기본계획의 심의＂를 기능에 포함하고 있 는 바，수산업법에서 기본계획이란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제 50 조 에서 정하고 있는＇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은 양식산업발전법안이 만들어지면 수산 업법에서 삭제될 것일 뿐만 아니라，수산업법에서는 포획•채취하는 어업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규율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향 후 이에 관한 규정도 구비되어야 한다．그래야만，수산조정위원회의 기 능 중＇기본계획의 심의＇에 관한 규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표 수산조정위원회와 수산업 • 어촌정책심의회의 비교＞

| 수산업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br> ［법률 제13385호， |
| :---: | :---: |
| ［시행 2016．6．23．히행 2016．3．28．］［법률 제13383호， |  |
| 2015．6．22．，타법개정］ |  |$\quad$| 2015．6．22．，제정］ |
| :---: |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조정위원회를，시－도와 시• 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 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를 각각 둔다．＜개정 2013．3．23．＞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1）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 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5．， 2011．7．25．，2012．12．18．，2013．3．23．＞
1．어업별 분쟁의 조정
2．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 쟁의 조정
3．기본계획의 심의
4．외해양식어업면허 신청자에 대 한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 항의 심의
5．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조정

5 의 2．제 6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선 복량 제한의 심의
6．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 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그 밖에 이 법，「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2）～（5）（생략）

두고，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에 시•도 수산업•어촌정책 심의회（이하＂시•도심의회＂라 한다） 를 두며，시•군 및 자치구에 시• 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중앙심의회，시•도심의회 및 시• 군•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시•도계획 및 시• 군•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제 10 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3．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3）중앙심의회，시－도심의회 및 시• 군•구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어업조정위원회로의 개편

현행 수산업법 제90조제6항에서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어업조정위원 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두어지는 어업조정위원회와 중앙수산조정위 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법문에 의하면 불명하다. 이러 한 관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 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나 양식산업 발전법상 두어지게 되는 위원회로 이전된다면, 수산업법에서는 제89 조제 1 항제 1 호 어업별 분쟁의 조정, 제 2 호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 3 호 기본계획의 심의, 제 5 호의 2 . 제 63 조의 2 제 1 항에 따 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제6호 중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제7호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 한 응답으로 정비될 것이고, 이 경우에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이 중심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기 보다는, 현행 수산조정위원회를 어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심의사항을 어업조정에 관한 심의, 건의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수산업 • 어촌의 분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이 영위되는 공간 또는 수산업 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관한 규율과 산업에 관한 규율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말하자면 산업의 진흥•육성을 위한 기본법과 공간의 조성•정비에 관한 기본법이 하나의 기본법에 수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입법연혁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율되고 있던 어업과 어 촌에 관한 사무들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 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법체계 를 답습하여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하 는 문제라 할 수 있다.

1) 어촌에 관한 규정

어촌에 관한 법규정은 하드웨어적 지역개발에 관한 것과 주민의 삶 의 질 향상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관련 규정의 범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헌법상 어촌개발 관련 규정의 변화

제정 헌법에는 어촌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이른바 유신헌 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제9호 헌법, 제10호 헌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신헌법과 제9호 헌법이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 로 하는 어촌개발을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연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헌법은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 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헌법 제 8 호, 1972.12.27.
제 11 장 경제
제 120 조 (1) 국가는 농민 -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 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2) 농민 - 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헌법 제9호, 1980.10.27.
제9장 경제

제 124 조 (1) 국가는 농민 -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 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2)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헌법 제 10 호, 1987.10.29.,
제9장 경제
제 123 조 (1)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 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 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 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2) 기본법과 관련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제2장 수산업•어촌정책의 수립 등’과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그리 고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어촌정책과 국제협력‘(제42조부터 제45조 까지)에서 어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어촌관련 법령의 특징으로는 어촌. 어항법이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으로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률 제명이 '농어촌'으로 되어 있다 는 점이다.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5. 농어촌도로 정비법
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9. 농어촌정비법
1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1. 농어촌특별세법
1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3. 어촌 - 어항법
1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연안관리법
1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9. 도서개발촉진법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조 지역발전 5 개년계획(농산어촌 등의 개발촉 진에 관한 사항), 제 16 조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
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5 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제9호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 에 관한 사항)
23. 수도법(제 5 조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 제 2 제 7 호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24. 수산업법(제74조 수산진흥종합대책 : 제2항제8호 어촌의 개발 및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2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제 10 조 수산직불금의 지급 등 : 어 촌지역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지급)
26. 식생활교육지원법(제 12 조 식생활교육 / 제 24 조 농어촌 식생활 체험활 성화,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2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28. 영유아보육법(제52조 도서•벽지 -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29. 지역문화진흥법(제9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경관법(제 16 조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시행)
(3) 어촌의 개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촌이 농촌과 구분되어 독자적 법규 율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아래에서는 어촌의 개념이 법제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발전의 전망을 하고자 한다.
먼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의 어촌의 개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어촌'을 정의하고 있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sim 5$. (생략)
2.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법률상의 어촌에 관한 정의에서 다음과 같은 어촌 개념의 세 가지 표지가 등장한다.

첫째, 어촌의 지역적 특성으로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어촌의 산업적 특성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셋째, 어촌의 행정구역적 특성으로 읍•면 및 동의 일부이어야 한다.

위 세 가지 개념표지 중에서 두 번째 표지인 "수산업으로 생활"한 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 만, 일단 세 번째 표지에 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표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동의 용도지역 중에 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어촌개념 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지역 전부와 읍•면의 전 지역을 합하여 어촌 개념의 표지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어촌에 관한 세 번째 개념 표지는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으나, 농촌과 어촌을 구분하 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 | :---: |
|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 2013.3.23., 2015.1.20., 2015.6.22.> |
|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
|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 |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 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 가. 읍•면의 지역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
| 말한다. |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 |
| 가. 읍•면의 전 지역 | 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는 지역 |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정된 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 조제 5 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12．2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2015．12．23．，전 부개정］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 2 호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 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자치구 $\left({ }^{( }\right.$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 조제 1 호 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 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다 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 산•보전녹지지역
나．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 지역
다．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 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  |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 30 조제 1 호나목（1） 의 제 1 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 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 :---: | :---: |

또한，읍•면의 지역은 어촌이라고 하는 전제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읍－면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에도 읍•면 전 지역을 동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도 검 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 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 으로 어촌을 농촌과 구분하는 기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어촌에 관한 첫 번째 표지를 중심으로 하여 두 번째 개념표 지를 구체화한다면 도시 및 농촌과 구별되는 어촌의 개념을 보다 명 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수산업의 분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수산업과 어촌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공통규정을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을 것이다．

수산업에 관한 규정 및 어촌에 관한 공통규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어촌 그 자체만을 위한 규정의 비중은 낮다고 할 수 있다．이는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산업에 관해서는 향후 어촌과 분리하여 독립된 기본법을 제정하 여, 수산업법이 종래 수행하여 왔던 신규 수산관련 산업의 법제를 수 용하고 이를 개별법으로 분화시키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산관련 법령 체계화의 장기적인 방향이 될 것이 라 생각된다.

어촌에 관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촌정책을 국민과 공무원이 항시 개관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다수의 어촌관련 법령을 체계화 작업 또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수산업과 어촌 관련 규정 구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업 | 수산업+ <br> 어촌 <br> (공통) | 어촌 |
| :---: | :---: | :---: | :---: |
| 제 1 장총칙 <br> 제 1 조(목적) <br> 제2조(기본이념) <br> 제 3 조(정의) <br>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및수산인•소비자 <br> 등의책임) <br> 제5조(수산인의날) <br> 제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 $\bigcirc$ |  |  |
| 제 2 장수산업 - 어촌정책의수립등 <br> 제7조(수산업 - 어촌발전기본계획등의수립) <br> 제 8 조(수산업 - 어촌정책심의회) <br> 제 9 조(기본계획등의추진) <br> 제 10 조(수산업 - 어촌에관한연차보고서) |  | $\begin{aligned} & 0 \\ & 0 \\ & 0 \\ & 0 \end{aligned}$ |  |

1.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개편
$\left.\begin{array}{|l|c|c|c|}\hline & & \begin{array}{c}\text { 수산업+ } \\ \text { 어손 }\end{array} & \text { 어넙 옵 어촌 발전 기본법 } \\ \text { (공통) }\end{array}\right]$

\begin{tabular}{|c|c|c|c|}
\hline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업 \& \begin{tabular}{l}
수산업 + \\
어촌 \\
(공통)
\end{tabular} \& 어촌 \\
\hline \begin{tabular}{l}
제 30 조(수산업관련연구및기술개발의촉진) \\
제 31 조(지식재산권등의보호) \\
제 32 조(수산업및어촌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
스의구축) \\
제 33 조(전담기관의지정 - 운영등)
\end{tabular} \& 0

0 \& ○ ○ \& <br>

\hline 제4장어촌지역의발전및삶의질향상 제 34 조(수산자원 - 어장의지속적이용과보전) 제 35 조(어촌의자연환경및경 관등보전) 제 36 조(전통어로문화의계승등) 제37조(수산업 - 어촌의공익기능연구•홍보등) 제 38 조(어촌지역의삶의질향상) 제 39 조(어촌지역산업의진흥및개발) 제 40 조(도시와어촌간의교류활성화등) 제 41 조(수산업및어촌지역의정보화촉진) \& $\bigcir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


\hline 제 5 장통일대비수산업 • 어촌정책과국제협력 제 42 조(북한의수산업생산등의조사 - 연구) 제 43 조(수산업 - 어촌의통상정책등) 제44조(수산업 - 어촌분야의국제협력) 제45조(수산물의수출진흥) \& $\bigcirc$ \& | ○ |
| :--- |
| O |
| ○ | \& <br>


\hline | 제6장수산발전기금 |
| :--- |
| 제 46 조(기금의설치) |
| 제 47 조(기금의조성) |
| 제 48 조(기금의운용 - 관리) | \& | ○ |
| :--- |
| ○ |
| ○ | \& \& <br>

\hline
\end{tabular}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업 | 수산업+ <br> 어촌 <br> (공통) | 어촌 |
| :--- | :---: | :---: | :---: |
| 제49조(기금의용도) <br> 제50조(기금의회계기관) | ○ |  |  |
| 제7장보칙 <br> 제51조(수산업정책자금의지원 • 관리) | ○ |  |  |
| 합계 | 27 | 20 | 4 |

## 2. 수산업법의 체계 개편 방안

(1) 어업법으로의 법명 개정 검토

1) 수산업의 범위
(1)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규율밀도

수산업법은 제정법 당시부터 그 목적을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 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산업을 어 업과 수산제조업으로 정의하고 수산업 전체에 대한 규율법으로서 기 능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다만 수산제조업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44조(수산제조업의 허가), 제45조(수산제조업의 허가기간), 제 46 조(수산제조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 제 47 조 준용 규정의 네 개 조문을 두고 있었다.

제정 당시부터 수산업법에서 수산제조업에 대한 규정의 비중은 그 다지 큰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산물가공업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 한다고 하는 규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 수산업법 | 수산업법 |
| :---: | :---: |
| [시행 1953.12.9.] [번륭 제295호, |  |
| 1953.9.9., 제정] |  |$\quad$ [법률 제13385호, 2015.6.22., 타법개정]

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 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 조하거나 또는 제조하려 할 때
2. 본 법,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제 47 조 제 14 조제 2 항, 제 15 조와 제 21 조의 규정은 수산제조업의 허가에 준용한다.
(2) 어획물운반업의 문제

어획물운반업은 1990년 개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수 산업법에 도입되었다가, 1999년 개정으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어획물운반업은 어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 나, 사업의 속성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계없이 "운반하는 사 업"이다. 운반에 관해서는 수산물의 유통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어획물운반업에 관한 수산업법의 입법연혁 >

| 수산업법 |  |
| :---: | :---: |
| [법률 제4252호, | 수산업법 <br> [시행 1991.2.2. <br> $1990.8 .1 ., ~ ㅈ ㅓ ㄴ ㅂ ㅜ ㄱ ㅐ ㅈ ㅓ ㅇ] ~$ |
| [법률 제13385호, 2015.6.22., 타법개정] |  |


| 을，＂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 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 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 업을，＂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 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 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 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 는 사업을 말한다． | 3．＂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 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 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20. (생략) |
| :---: | :---: |
| 제4장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제조업 제 46 조（어획물운반업의 허가）（1）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고 자 하는 어선마다 수산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br>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 반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5 년이 내로 한다． <br> （3）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 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과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을 의뢰할 수 있는 어업의 종 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어선 의 톤수，기관의 마력，시설기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그 제품 의 종류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옮겨 실을 수 있는 해역 기타 허 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어획물운반업 <br> 제57조（어획물운반업 등록）（1）어획 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 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 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 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 여도 된다． <br> 1．제 8 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br> 2．제 27 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 이나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7 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 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br> （2）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 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 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 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 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


|  | 다. <개정 2013.3.23> <br> (3) 시장 • 군수•구청장은 제58조 제 1 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 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 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 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 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 :---: | :---: |
| 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1) 수산청장은 어획물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 가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br>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 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 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br> 2.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 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 반한 때 <br>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br> 또는 취소) (1) 시장•군수•구청 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 을 제한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 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br>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 하여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 반한 때 <br> 가. 제 8 조제 1 항, 제 12 조, 제 15 조제 1 항, 제 27 조제 1 항 • 제 4 항, 제 32 조제 1 항, 제 34 조제 1 항, 제 35 조, 제 41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제 43 조, 제 47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4 항, 제 61 조, 제 66 조 <br> 나.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 15 조제 1 항, 제 32 조제 1 항, 제 34조제 1 항 및 제 35 조제 1 호•제 3호•제4호•제6호 |


|  | 2．「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 한 경우 <br> 3．제 57 조를 위반하거나 제 60 조에 따 라 준용되는 제 30 조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제 31 조제 1 항•제 3 항，제 32 조，제 34 조제 1 항제 2 호•제 3 호•제 7 호，제 35 조제 1 호，제 48 조제 1 항•제 3 항－제4항을 위반한 때 <br> 4．제 60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 12 조 및 제 43 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 반한 때 <br> 5．제 70 조제 2 항 및 제 72 조제 1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br> （2）제 1 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 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 :---: | :---: |

2）수산업의 기본제도의 의미
수산업법에서의＂수산업의 기본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법률의 규정내용으로 풀이하자면，수산업（어업과 수산제조업）의 기본제도라 할 수 있고 이는 다시，어업의 기본제도와 수산제조업의 기본제도로 분해할 수 있다．여기서 일단＇수산제조업의 기본제도’라고 구문의 의 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수산업법에서 수산제조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것은 ‘통조림제조업이나 魚油肥製造業을 하려면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그 허가기간은 10 년 이내로 하며，수산업 법이나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로로 제조하거나 제조하려는 경우 등에는 수산제조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 에，이 내용을 수산제조업의 기본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다．영업에 관한 허가제도의 운용은 행정관계 법률에서 상당히 보편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제도＇를＇어업의 기본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수 산업법에서 어업에 관해서는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제도를 설정하고，면허어업에 관해서는 우선순위의 설정，어업권의 창설，어 업조정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어업법（1949년 법률 제267호）은＂어업생산에 관한 기본적 제 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동법 제1조），＂어업생산에 관한 기본적 제도＂란＂어장의 이용관계（이용방식）＂즉，＂어장을 누구에 게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그리고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가＂를 정하는 제도27）라고 이해하고 있다．

일본 어업법에서의 어장의 이용관계（이용방식）를 정하는 제도는 두 가지 있는데，하나는 연안수역 및 내수면에 적용되는 어업권제도（어업 면허제도）이고，또 하나는 연근해수역 및 원양수역에 적용되는 어업허 가제도이다．1949년 일본 어업법의 어업권，특히 이른바 조합관리어업 권（공동어업권 등）은 어촌보호와 어장유지에 있어 유효하고 연안어업 관리를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28）

즉，수산업의 기본제도는 어업의 기본제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어장의 이용관계，특히 어업권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면허어업의 중심인 양식어업이 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으로 분리된 다면，수산업법에서는 연근해수역에 적용되는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 업만이 남게될 것이다．

27）田平紀男，日本漁業法小史一漁業法準備期を中心としてー，鹿児島大学法学論集 第39卷第2号，105頁．
28）田平紀男，앞의 논문， 105 頁．

따라서, 수산업법이라고 하나 수산업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 물가공업과 어획물운반업이 다른 법률의 규율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편되고, 수산업의 기본제도 중에서 어업권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양식어업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화되면, 남게되는 법률내용에 대해 여전히 수산업법이라는 법명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형식이 될 수 있다.
(2) 내수면으로의 적용범위 확장 - 내수면어업법의 흡수 • 통합 1) 연혁적 검토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제정당시의 수산업법은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 분하지 아니하고 공공수면이라면 적용하였던 바이고, 이에 따라 면허 어업이나 허가어업에서도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면허 나 허가를 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 수산업법 <br> [시행 1953.12.9.] <br> [법률 제295호, <br> 1953.9.9., 제정] | 수산업법 <br> [시행 1991.2.2.] <br> [법률 제4252호, <br> 1990.8.1., <br> 전부개정] | 수산업법 <br> [시행 1996.12.31.] <br> [법률 제5131호, 1995.12.30., 일부개정] | 수산업법 <br> [법률 제13385호, 2015.6.22., 타법개정] |
| :---: | :---: | :---: | :---: |
| 제 3 조 (적용범위) <br> (1) 공공수면이 아 닌 수면에는 별단 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br> (2) 공공수면이 아 닌 수면이 공공수 면과 연접하여 일 체가 되었을 때에 는 본 법을 적용 한다. | 제3조 (이 법을 적 용하는 수면) 이 법은 바다. 빈지 또는 어업을 목적 으로 하여 인공적 으로 조성한 육상 의 해수면에 대하 여 이를 적용한다. | 제3조 (이 법을 적 용하는 수면) 이 법은 바다.바닷 가와 어업을 목적 으로 하여 인공적 으로 조성한 육상 의 해수면과 내수 면(제 7 장의 경우 에 한한다)에 대 하여 이를 적용한 다.<개정 1995 $12 \cdot 30>$ | 제 3 조(적용범위) <br>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br> 1. 바다 <br> 2. 바닷가 <br> 3. 어업을 목적으 로 하여 인공적 으로 조성된 육 상의 해수면 |


| 제 8 조 (면허어업) <br> (1)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면허 를 받어야 한다. <br> 1. 양식어업 일 정한 수면에서 구획 기타 시 설을 하여 양 식하는 어업 <br> 2. 정치어업 일정 한 수면에서 어 구를 정치하여 채포하는 어업 <br> 3. $\sim 6$. (생략) <br>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 은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어 장이라 한다. <br> 제12조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 좌의 각호에 해당 하는 어업을 하려 고 하는 자는 지 방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br> 1. 인망어업 수 면을 일정하지 아니하고 스크 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 제41조 (허가어업) <br> (1) (생략) <br> (2) 다음 각호의 <br> 1 에 해당하는 어 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 마다 시•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br> 1. (생략) <br> 2. 육상에서 인공 적으로 조성한 해수면에서 수 산동식물을 양 식하는 어업(이 하 "육상양식어 업"이라 한다) <br> 3. 일정한 수면 을 구획하거나 육상에서 시설 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 산하는 어업 (이하 "종묘생산 어업"이라 한다) (3) ~(6) (생략) | 제41조 (허가어업) <br> (1) (생략) <br> (2) 다음 각호의 <br> 1 에 해당하는 어 <br> 업을 하고자 하 <br> 는 자는 어선• <br> 어구 또는 시설 <br> 마다 시•도지사 <br> 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br> <개정 1995•12• <br> 30> <br> 1. (생략) <br> 2. 삭제 $<1995$ $12 \cdot 30>$ <br> 3. 일정하게 구획 된 수면에 시 설물을 설치하 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생산된 종묘를 일 정 기 간 동 안 중 간 육 성 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해상 종묘생산어업" 이라 한다) | 제41조(허가어업) <br> (1) ~ (2) (생략) <br> (3) 다음 각 호의 <br> 어느 하나에 해당 <br> 하는 어업을 하려 <br> 는 자는 어선•어 <br> 구 또는 시설마다 <br> 시장•군수•구 <br> 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br> <개정 2010.1.25, <br> 2013.3.23> <br> 1. (생략) <br> 2. 육상해수양식 어업: 인공적으 로 조성한 육상 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 물을 양식하는 어업 <br> 3. 삭제 <br> <2015.6.22> |
| :---: | :---: | :---: | :---: |



특히, 1971년 개정법률에서는 내수면어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4장 내수면어업을 신설하였고,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제 정되면서 1975년 수산업법 개정법률에 의해 삭제되었다.

| 수산업법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 :---: | :---: |
| [시행 1971.7.23.] [ᄇㅓㅝ륭 제2300호, | [시행 1976.7.1.] [법륭 제 2835 호, |
| 1971.1.22., 일부개정] | 1975.12.31., 제정] |

4. 낚시의 허용기간 및 방법
5. 기타 낚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1•22]
제 23 조의 8 (자원유지를 위한 시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호소•저수 지등 내수면의 관리자는 갈수기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 하여 일정한 수위의 유지와 그 자 원의 서식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야 한다.
(2) 도지사는 관리자가 전항의 규 정에 의하여 필요한 수위의 유지 나 서식에 필요한 시설을 한 때에 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22]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법:내수면에서 자망을 사 용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
2. 투망어업:내수면에서 투망을 사 용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
3. 종묘채포어업:양식을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4. 주낚어업:내수면에서 주낚을 사 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
5. 어전어업:하천을 차단하여 어전 을 설치하고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
6. 패류채취어업:내수면에서 항망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또 는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포하는 어업
7. 낚시업: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 타 시설을 하여 낚시터를 경영 하는 업
(2) 수산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 • 보호•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항 이외의 어업 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도지사가 제 1 항의 어업을 허가 할 때에는 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 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고어업)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어업 이외의 어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과 내수면어업법의 관계

양식산업발전법은 그 적용범위를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아니 하고, 양식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규율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병행적으로 수산업법에서도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아니 하고 어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체계 개편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내수면어업을 어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다(제8장 내 수면어업, 제 127 조부터 제 132 조까지).
(3) 어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입법연혁적으로 수산업법에 ‘계획’에 관한 규정은 1975 년 개정으로 신 설된 제52조의 ‘어장의 이용 및 개발계획’이 처음이었고, 이는 1990년 전부개정으로 제 4 조에 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 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규정의 연혁>
$\left.\begin{array}{|c|c|c|}\hline \begin{array}{c}\text { 수산업법 } \\ \text { [시행 1976.7.1.] [법률 } \\ \text { 제2836호, 1975.12.31., } \\ \text { 일부개정] }\end{array} & \begin{array}{c}\text { 수산업법 } \\ \text { [시행 1991.2.2.] [법률 } \\ \text { 제4252호, 1990.8.1., } \\ \text { 전부개정] }\end{array} & \begin{array}{c}\text { 수산업법 }\end{array} \\ \text { [시행 2016.6.23.] [법률 } \\ \text { 제13385호, 2015.6.22., } \\ \text { 타법개정] }\end{array}\right]$

| (2) 도지사는 제 8 조의 | 용개발계획을 수립하 | 기 위한 어장이용개발 |
| :---: | :---: | :---: |
| 규정에 의한 어업의 | 여야 한다. | 계획(이하 "개발계획" |
| 면허를 할 때에는 제 | (2) 시 - 도지사는 제 1 | 이라 한다)을 세워야 |
| 1항의 어장이용개발 | 항의 규정에 의한 어 | 한다. |
| 계획의 범위 안에서 | 장이용개발계획을 수 | (2) 시장 - 군수 - 구청장 |
| 하여야 한다. | 립하고자 하는 수면 | 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 |
| [전문개정 1975•1 | 이 다른 법령의 규정 | 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 |
| 2-31] | 에 의하여 어업행위 |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 |
|  | 가 제한 또는 금지되 | 을 받아야 한다. |
|  | 고 있는 수면인 경우 | (3) ~ 7 ( ${ }^{\text {(생략) }}$ |
|  | 에는 미리 관계행정 |  |
|  | 기관의 장의 승인을 |  |
|  | 얻거나 협의를 하여 |  |
|  | 야 한다. |  |
|  | (3) 제 1 항의 어장이용 |  |
|  | 개발계획의 수립절차 |  |
|  | 등에 관하여 필요한 |  |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
|  |  |  |

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수산업법 제8조제2항을 보면 명확한 것처럼, 어 업면허를 하기 위한 지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면허어업에 관한 계획 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수산업법 제 50 조의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 계획'은 양식어업에 관한 것으로서 어업 전체에 관한 기본계획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제 4 조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면허어업에 관한 계획으로 서의 기능을 하고, 제 50 조의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은 양식어업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 표의 음영처리된 부분에 관한 계획이다.

따라서 포획•채취 어업 중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관해서는 계획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포획•채취어업에 관한 규율 중심으로 수

산업법이 개편되면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등에 관한 발전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이러한 계획의 범위에 들어오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산업법이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표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범위>

\left.| 수 산 업 |  |  |  | 어획물 |
| :---: | :---: | :---: | :---: | :---: |
| 운반업 | 우업 | 산물 |  |  |
| 가공업 |  |  |  |  |$\right]$

수산업 특히 어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는 내수면어업법 제5조의 ‘내수면어업진흥 기본계획',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참조하여 산업으로서의 어업을 진흥 내지 육성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어업의 구조개선 내지 지원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 개별법률로 분법되면, 수산업법에 남는 규정은 주로 어선어업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종래 수산자원의 이용에 관한 규제가 중심이었던 수산 업법을 산업의 육성 내지 진흥에 관한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산업법의 개편에 있어 기존 조문의 개편 뿐만 아니라, 어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 그리고 구조개선 내지 선진화에 관한 규정 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어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어업선진화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한다면, 규제 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법으로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될 것이다.
(5) 수산업법 개정방향 개요 - 어업법으로의 전부개정 시안 < 표 수산업법 개정방향에 관한 개요표 >

| 어업법 |  | - 법률명을 "어업법"으로 변경 |
| :---: | :---: | :---: |
| 제1장 <br> 총칙 | 제1조(목적) <br> 제2조(정의) | - 적용범위를 내수면까지 포괄 <br> 하는 것으로 개정 |


|  | 제3조(적용범위) <br>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br> 의 책무) | - 양식어업관련 규정의 정비 (제 2 조제 1 호, 제 2 호 개정, 제 5호, 6 호, 7 호 삭제, 제 14 호 개정, 제4조 삭제) <br> - 현행 제 5 조(외국인에 대한 어 업의 면허 등), 제 6 조(서류 송 달의 공시), 제 7 조(공동신청) 는 보칙에 관한 장으로 이전 |
| :---: | :---: | :---: |
| 제 2 장 어업발전 기본계획 등 | 제5조(어업발전기본계획) <br> 제6조(어업발전시행계획) <br> 제7조(실 태조사) <br> 제8조(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br> -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 <br> -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br> 운영 | ○ 산업으로서의 어업을 발전 시키기 위한 장기계획 및 단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 정 신설 <br> ○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 제 10 장 수산조정위원회 관 련 규정을 어업조정위원회 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
| 제 3 장 <br> 어업 <br> 선진화 <br> 추진 | 제9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 10 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br> - 어업의 구조개선 등 어업 의 선진화 및 발전을 지 원하기 위한 규정 신설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을 이관하여 어업의 구조개선 내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 제4장 <br> 면허어업 | 제11조(면허어업) <br> 제 12 조(마을어업등의면허) <br> 제 13 조(면허의결격사유) <br> 제 14 조(면허의금지) <br> 제 15 조(면허의제한및조건) <br> 제 16 조(우선순위) <br> 제 17 조(면허의유효기간) <br> 제 18 조(면허제한구역등에 대 <br> 한한정어업면허) <br> 제 19 조(어업권의취득과성질) <br> 제20조(어업권의등록) | ○ 양식어업에 관한 규정 삭제 : 제 8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5호까지 삭제, 제7호 및 제 8호 삭제 <br> - 제 13 조의 2 삭제 <br> - 제 28 조 삭제 <br> - 제 40 조의 2 삭제 <br> ○ 현행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은 양식산업발전법안 으로 이관 <br> ○ 현행 제5장 어획물운반업 |


|  | 제21조(어업권과다른 법률과 의 관계) <br> 제22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br> 제 23 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 24 조(어촌계등의 어업권 담보금지) <br> 제 25 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br> 제 26 조(공유자의 동의) <br> 제 27 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br> 제 28 조(처분한 때의 권리• <br> 의무의 승계) <br> 제29조(어업권의 경매) <br> 제 30 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br> 제 31 조(보호구역) <br> 제32조(휴업신고 및 어업권 <br> 포기의 신고) <br> 제 33 조(어업의 개시 등) <br> 제 34 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 배금지) <br> 제 35 조(임대차의 금지) <br> 제 36 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등) <br> 제 37 조(면허어업의 취소) <br> 제 38 조(어업권의 취소통지) <br> 제 39 조(어촌계등의 어장관리) <br> 제 40 조(어장관리규약) <br> 제 41 조(어업권행사의 제한등) <br> 제42조(입어등의 제한) | 은 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 로 이관 <br> ○ 현행 제7장수산업의육성은 기본법으로 이관 |
| :---: | :---: | :---: |
| 제5장 <br> 허가어업과 <br> 신고어업 | 제43조(허가어업) <br> 제44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br> 제 45 조(한시어업허가) <br> 제 46 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 - 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 업 삭제 : 제41조제 3 항제 2 호 삭제, 제4항제 3 호 삭제 |


|  | 조건) <br> 제47조(어업허가를 받은 자 의 지위승계) <br> 제48조(시험어업 및 연구어 업•교습어업) <br> 제49조(어업허가등의 유효기간) 제50조(신고어업) <br> 제51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의 변경•폐업등) <br> 제52조(준용규정) |  |
| :---: | :---: | :---: |
| 제6장 <br> 어업조정 <br> 등 | 제53조(어업조정등에 관한 명령) <br> 제54조(조업수역등의 조정) 제 55 조(허가정수등의 결정) <br> 제56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br> 제57조(어선의 장비와 규모등) <br> 제58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br> 제59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br> 제 60 조(유어장의 지정등) <br> 제61조(면허•허가 또는 신 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br> 제62조(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br> 제63조(어구•시설물의 철거등) 제64조(표식의 설치 및 보호) 제65조(감독) <br> 제66조(해기사면허의 취소등) 제67조(어업감독공무원) <br> 제68조(사법경찰권) |  |
| 제7장 <br> 보상 - <br> 보조 및 <br> 재결 | 제69조(보상) <br> 제 70 조(수질오염에 따른 <br> 손해배상) <br> 제 71 조(보상금의 공탁) <br> 제72조(입어에 관한 재결) |  |


|  | 제 73 조(어장구역등에 관한 <br> 재결) <br> 제74조(보조등) <br> 제 75 조(보상•보조및재결에 관한세부규칙)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제8장 } \\ & \text { 보칙 } \end{aligned}$ | 제 76 조(과징금 처분) <br> 제77조(포상) <br>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br> 제79조(수수료) <br> 제 80 조(청문) <br> 제 81 조(어업데이터베이스의 구축) <br> 제 82 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 원 의제) <br> 제 83 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등) <br> 제84조(서류송달의 공시) <br> 제 85 조(공동신청) | $\bigcirc$ 현행 제 1 장 총칙규정 중 일부를 보칙으로 이전 <br> - 제4조(외국인에 대한어업의면 허등) <br> - 제6조(서류송달의공시) <br> - 제7조(공동신청) <br> ○ 현행 제 81 조의 수산데이터 베이스를 어업데이터베이스 로 개정하여 규정 |
| 제9장 <br> 벌칙 | 제86조(벌칙) <br> 제87조(벌칙) <br> 제88조(벌칙) <br> 제89조(벌칙) <br> 제 90 조(몰수) <br> 제91조(양벌규정) <br> 제92조(과태료) <br> 부칙(생략) | - 양식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

(6) 하위법령의 체계 개편

수산업법은 제정 이후 수산관련 법제도가 도입되었다가 개별법률로 분화되어 가는 모체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고, 이러한 역사적 사명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과는 달리 하위 법령의 체 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령이 4 개, 시행규칙이 8 개이며, 그 내용도 수산업법 뿐 만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이나 어장관리법에 관한 규율도 포함하고 있는 하위법령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수산업법의 정비가 이루어지면, 이를 기본으로 하위법령도 입 법형식에 맞게 단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법 률 | 수산업법 | 비 고 |
| :---: | :---: | :---: |
| 시행령 |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 수산업법 관련 다수의 대 통령령을 통합하는 시행 령으로 활용 |
|  |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br> [시행 2014.11.19.] <br> [대통령령 제25751호, <br> 2014.11.19.,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72조에 따 른 규정이지만 위임근 거법령이 규정되어 있 지 않음 <br> 이 규정을 직접 근거로 하는 법령 없음 <br> ○ 수산업법 시행령에 통 합•정리 |
|  | 어업등록령 <br> [시행 2015.3.19.] <br> [대통령령 제26147호, <br> 2015.3.17.,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17조에 따 른 대통령령 <br>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 로 하는 권리 및 입어 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 <br> 현행과 같이 별도의 규 정으로 존치 |
|  | 정치어업권보상규정 <br> [시행 1970.3.19.] <br> [대통령령 제4768호, 1970.3.19., 전부개정] | $\begin{aligned} & \text { ○ 법률 제 } 1321 \text { 호 수산업 } \\ & \text { 법 중 개 정 법률 (시 행 } \\ & \text { 1963.7.1., 법률 제 } 1321 \\ & \text { 호, 1963.4.11., 일부개 } \end{aligned}$ |


| 법 률 | 수산업법 | 비 고 |
| :---: | :---: | :---: |
|  |  | 정）부칙 제3항에 따른 <br> 어업권의 보상에 필요 <br> 한 사항 규정 |
| 부칙 제3항（同前）：이 |  |  |
| 법시행으로 인하여 소 |  |  |
| 멸되거나 취소되는 어 |  |  |
| 업권에 대하여는 閣令 |  |  |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 소멸되는 날로부터 2년 |  |  |
| 이내에 이를 보상한다． |  |  |
| 수산업법 시행령 제9장 |  |  |
| （보상•보조 및 재결）에 |  |  |
| 흡수통합 규정 |  |  |


| 법 률 | 수산업법 | 비 고 |
| :---: | :---: | :---: |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4．］ <br> ［해양수산부령 제179호， <br> 2016．1．4．，일부개정］ | ○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과 통 합하여 가칭「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정리 |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 한 규칙 <br> ［시행 2016．6．30．］ <br> ［해양수산부령 제194호， <br> 2016．6．30．，타법개정］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통합하여 가칭 「수산업법 시행규 칙」으로 정리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 한 규칙 <br> ［시행 2016．6．23．］ <br>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br> 2016．6．23．，타법개정］ |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가칭 「수산업 법 시행규칙」으로 정리 |
|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br> ［시행 2013．3．24．］ <br> ［해양수산부령 제1호， <br> 2013．3．24．，타법개정］ | 시행규칙의 제명을＇어 업＇으로 개정하고，가칭「수산업법 시행규칙」으 로 정리 |
|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br> ［해양수산부령 제63호， <br> 2013．12．30．，타법개정］ | ＇어획물운반업＇을 유통 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으로 정리하고，어업이 라는 범주 속에 포함시 킬 경우에는 가칭 「수 산업법 시행규칙」으로 정리 |

제 4 장 수산관련 법령의 체계 개편방안

| 법 률 | 수산업법 | 비 고 |
| :---: | :---: | :---: |
|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br> [시행 2016.6.23.] <br>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br> 2016.6.23., 타법개정] | ○ 수산업법 제65조에 따 른 시행규칙으로서 그 내용은 관광용어장(체 험학습이나 낚시 등을 할 수 있는 수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것 어업과는 성격을 달리 는 것으로 현행 유지 |
|  | 연근해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 에 관한 규칙 <br> [시행 2016.1.1.] <br> [해양수산부령 제 176 호, <br> 2015.12.30., 일부개정] | ○ 가칭 「수산업법 시행규 칙」으로 정리 |

## 참 고 문 헌

## I．국내문헌

＜보고서＞

전재경 외，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체계 정비－개선방안 연구，2002．10， 해양수산부

최성애，수산기본법 제정방안，2007년도 수산부문 연구과제 추진상황，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제3분과위원회），2007．10．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양식산업육성법」 제정 및 친환경양식 연구， 2012．6．，농림수산식품부
＜정부간행물＞

제332회국회（임시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제5호，2015년 4월 24일，국회사무처

안효대의원 대표발의，양식산업발전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88，발의연월일 2015．6．24．

## ㅍ．외국문허 <br> ＜논 문＞

田平紀男，日本漁業法小史一漁業法準備期を中心としてー，鹿児島大学法学論集 第39卷第2号

참 고 문 헌

## III.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2016년 11월 7일 최종접속)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2016년 11월 7일 최종접속)


[^0]:    * Although in English, both 'Susaneopbeop' and 'Eoeopbeop' may be translated as 'Fisheries Act,' the Korean word 'eoeop' has a less inclusive meaning than 'susaneop' which broadly refers to all fishery-related industries including rearing fish, and transporting and processing fishery products, in addition to the industry of catching fish proper.

[^1]:    7) 제•개정이유는 관보에 게재된 내용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서 발췌하여 표로 정리한 것임
[^2]:    24）시행 2016．6．23．，법률 제 13385 호，2015．6．22．제정．

